

제 1 장 의원 윤리 강령	3
제 2 장 논산군의 표상	4
제 3 장 발 간 사	5
제 4 장 축 사	6
제 5 장 일반현황	7
• 연혁 및 위치	
• 지역특성 및 기본현황	
• 지방자치 연혁	
제 6 장 의회현황	10
• 의회기구	
• 의원현황	
• 위원회별 소관 실·과·소	
• 의회예산	
• 도서현황	
• 장비현황	
• 의회 시설현황	
제 7 장 의회사무과	12
• 의회사무과 현황	
제 8 장 의원명단	13
• 제 1 대 의원명단	
제 9 장 의회운영현황	19
• 회의개회 현황	
• 의안처리 현황	
• 상임위원회별 의안처리 현황	

제 10 장 특별위원회 구성 3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놀미향토제에 관한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 민원관련 현지방문 특별위원회
-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지구 추가 지정 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

제 11 장 본회의 회의록 35

제 12 장 행정사무감사 106

- 감사개요
- 92년도
- 93년도
- 94년도

제 13 장 군정질문 및 답변 120

- 92년도
- 93년도
- 94년도

제 14 장 의정화보 145

제 15 장 논산군의회 원구성 149

제 16 장 우수사례 150

제 17 장 의회용어 해설 151

제 18 장 여 운(의원싸인복) 160

논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의원은 논산군민의 대표이면서 공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과 도덕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주민의 모범이 된다.
1.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욕구와 희망하는 바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써 의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발전의 일대전기가 되도록 책무를 다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사를 구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논산군의 표상

• 논산군의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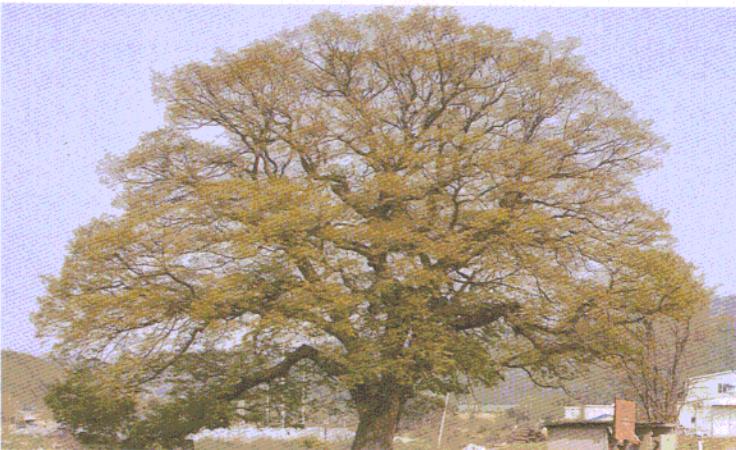
까치 : 까치가 가까이 와서 울면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하여 길조로 여기는 새이며, 사철 등지를 중심으로 한곳에 사는 텃새로서 우리 군의 상징이며 밝고 명량한 군민상을 상징한다.

• 논산군의 꽃

개나리 : 관상용 산울타리용으로 많이 재배하며 4월에 노란 꽃이 핀다. 봄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는 꽃이며 새 날을 연다는 뜻으로 미래에 대한 군민의 밝은 희망을 상징



• 논산군의 나무



느티나무 : 마을 어귀에 녹음수로 많이 자라고 있으며 재목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서 매우 아름답다. 거목으로서 우리 군의 웅장함을 상징한다.

발 간 사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맞이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초대의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염려와 따뜻한 격려로 지도하여 주신 17만 논산군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우리군 의원 전원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의정활동을 의정 4년 결산으로 수록하여 주민에 널리 알리고저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고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2대 의정에 임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이 크고 작은 바람과 의견을 개진하며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와 주민과 늘 호흡을 같이하며 생활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주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채찍이 뒤따르기를 바라면서 발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6. 30

논산군의회 의 장 임 성 규

축 사



1991년 4월 15일 주민들의 많은 기대속에서 개원되었던 논산군의회가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훌륭한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놓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산발전을 위하여 그야말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임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논산군의회는 초창기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면서 예산안의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므로써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의회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 또한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집행부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논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의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은 새로운 자치문화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제2의 창조와 약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5. 6. 30

논 산 군 수 김 두 회

일 반 현 황

□ 沿革 및 位置

○ 沿 革

年 帶	沿 革
百濟	○ 德近, 黃等也山郡 (2郡), 珍惡山, 熱也山, 加知奈縣(3縣)
新羅	○ 德殷, 黃山郡(2郡), 尼山, 市津, 石山縣 (3縣)
高麗	○ 德恩, 連山郡(2郡), 尼山, 市津, 石城縣 (3縣)
朝鮮	○ 魯城, 恩津, 連山, 石城縣 (4縣)
1914. 3	○ 論山郡으로 統合 (15面)————— 府令 第111號
1931. 4. 1	○ 江景面 → 江景邑 (1邑 14面)————— 府令 第103號
1938. 10. 10	○ 論山面 → 論山邑 (2邑 13面)————— 府令 第197號
1963. 1. 1	○ 全北 益山郡 皇華面 編入 皇華面, 九子谷面 → 鍊武邑 (3邑 12面) 法律 第 1177號
1989. 1. 1	○ 大德郡 鎭岑面 南仙里 豆磨面 編入————— 法律 第4049號
1990. 2. 19	○ 豆磨面 鷄龍出張所 管轄區域————— 道條例 2029號

○ 位 置

郡 廳 所在地	經 度 와 緯 度 의 極 點			
	端	地 名	極	點
論山邑	東 端	伐 谷 面 晚 木 里	東 經	1 2 7 2 1
奈洞里	西 端	城 東 面 牛 昆 里	東 經	1 2 6 5 9
824	南 端	鍊 武 邑 高 內 里	北 緯	3 6 0 4
	北 端	豆 磨 面 龍 洞 里	北 緯	3 6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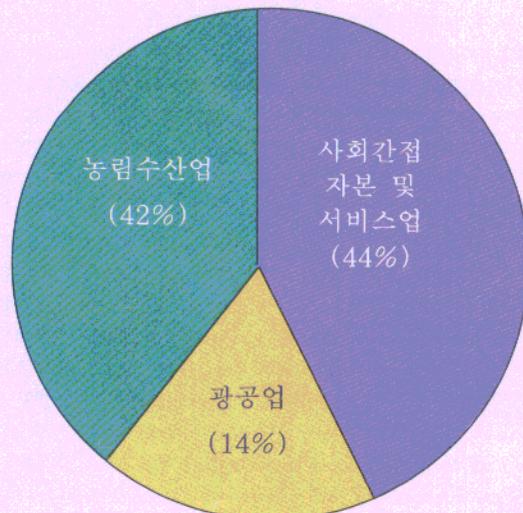
□ 지역특성 및 기본현황

지 역 특 성

- 넓은 평야와 함께 전통적인 농업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3개읍을 갖고 있는 도시형 농촌으로
- 사통오달의 교통 요충지로 농산물의 집산지임.
- 3軍 本部 제2훈련소 등이 위치해 있는 국방의 요충지이며,
- 忠節과 禮學의 고장으로 사계 金長生등 많은 유학의 거장을 배출한 고장임.

기 본 현 황

- 면 적 : 614.72 km^2 (도의 7.3%)
- 가 구 수 : 47,135가구 (도의 8.2%)
- 인 구 수 : 165,105명 (도의 9%)
- 행정구역 : 3읍 12면 (두마면 포함)
- 산업구조



□ 지방자치 연혁

○ 지방자치법(의회 개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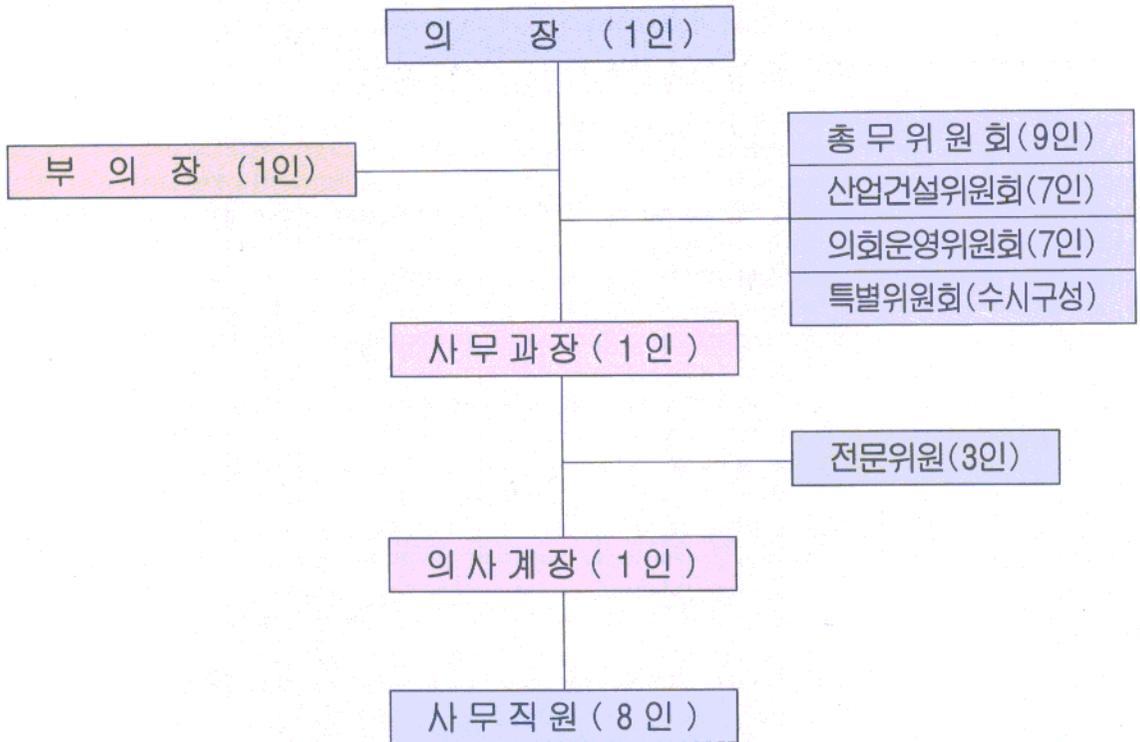
- 1948. 7. 제헌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 도입
- 1949. 7. 4. 지방자치법 제정 (권력분립형 채택)
- 1949. 12. 15. 제1차 개정 (장의 임명제)
- 1956. 2. 12. 제2차 개정 (지사, 서울시장은 임명제, 시·읍·면·리 직선제)
- 1956. 7. 8. 제3차 개정 (임기까지 기득권 인정)
- 1958. 12. 26. 제4차 개정 (시·읍·면장의 임명제)
- 1960. 11. 1. 제5차 개정 (자치단체장 직선제)
- 1961. 5. 16. 군사혁명위 포고 제4호에 의거 전국 지방의회 해산
- 1961. 9.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읍·면 자치제 폐지 → 군을 기초자치단체화)
- 1988. 4. 6. 제6차 개정 (단체장의 재의요구 및 선결처분권 부여)
- 1989. 12. 30. 제7차 개정 (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 부여)
- 1990. 12. 31. 제8차 개정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대상중 일부 허용)
- 1991. 12. 31. 제9차 개정 (시·군·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 논산군 의회

- 1991. 4. 15. 개원 (1991. 3. 26. 선거 : 의원선출)
- 1992. 3. 13. 상임위원회 구성
 -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회 운영위원회

의 회 현 황

□ 의회의 기구



□ 의원현황

선거구수	의 원 정 수					비 고
	계	의 장	부 의 장	상임위원장	의 원	
15	17	1	1	3	12	논산읍 2 연무읍 2

□ 위원회별 소관 실·과·소

위 원 회 명	소 관 실 · 과 · 소
총 무 위 원 회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과

□ 의회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년도별	계		의 회 운 영		의회사무과 운영		비 고	
	총	권	총	권	총	권	총	권
91년도	351,671		196,780		154,891			
92년도	259,733		82,370		177,363			
93년도	512,758		205,620		307,138			
94년도	525,202		170,320		354,882			
95년도	751,796		413,644		338,152			

□ 도서현황

계		사전		법령·법규		논문		전문서적		의회관련		교양도서		기타	
총	권	총	권	총	권	총	권	총	권	총	권	총	권	총	권
464	483	32	36	91	91	33	36	87	89	29	33	169	175	23	23

□ 장비현황

계	차량	팩시밀리	컴퓨터	복사기	V.T.R	녹음기 녹취기	사진기	앰프	T.V	에어콘	기타
30	2	1	3	1	1	6	1	2	2	6	5

□ 의회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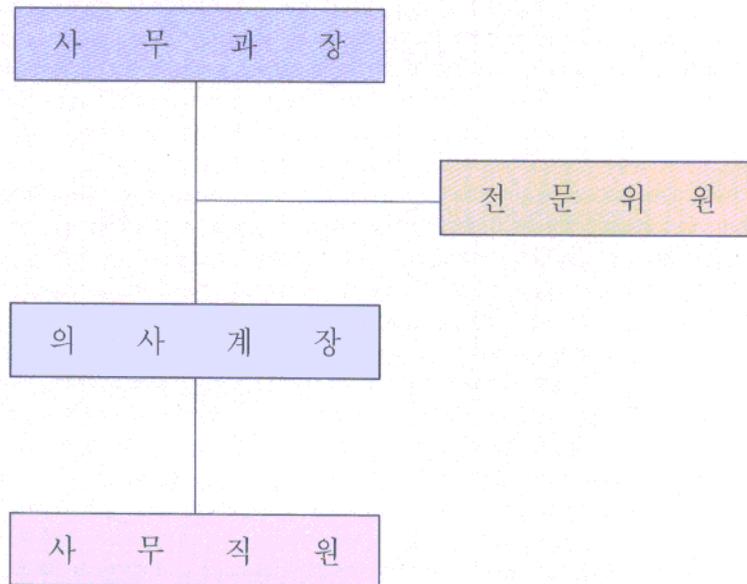
구분	계	회 의 장					의 장 실			부 의 장 실	의 원 사 무 실	전 문 위 원 실	직 원 사 무 실
		소 계	본 회의 실	총무위원회의실	산업건설위원 실	회 의 의 회 운영 위 원 실	소 계	집 무 실	부 속 실				
면적	232	117	67	20	20	10	30	20	10	15	30	20	20

의 회 사 무 과

○ 군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과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고,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의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직 제 :



□ 의회사무과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비 고
		5 급	6 급	7 급		
정 원	13	3	2	2	6	
현 원	13	3	2	2	6	1(일용)

□ 의원명단

출신지역	성명(생년월일)	경력사항	연락처
논산읍	 임성규(38.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졸 충남대 행정대학원 수료 한국자유총연맹 논산군지부장 논산군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논산군 장애인협회 후원회장 대한통운 논산출장소 대표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대표 논산군의회 의장(전·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논산읍 화지리 104-1 전화번호 (자) 735-7007 (사) 735-2955
논산읍	 송상현(36.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산농업고 졸 논산읍 변영회장 충남 사회체육협의회 부회장 논산군 사회체육협의회 회장 태성관광 상무 총무위원회 위원장(후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논산읍 취암리 296-28 소산아 파트 가동 304 전화번호 (자) 735-2659 (사) 32-3211 32-3212
강경읍	 강중선(43.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일고 졸 충남대 행정대학원 수료 강경 청소년회의소 고문 강경읍 변영회장 우남석재상사 대표 논산군의회 부의장(전반기) 95. 3. 29 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강경읍 대흥리 52-9 전화번호 (자) 745-1606 745-1607 (사) 745-1608

출신지역	성명 (생년월일)	경력사항	연락처
연무읍	 우 오 중(31.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고 졸 • 광석면, 채운면 면장 • 강경읍, 연무읍 읍장 • 민자당 논산지구당 부위원장 • 예비역 장교단 연무장우회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연무읍 동산리 산 55 • 전화번호 (자) 741-6372
연무읍	 서 평 석(45.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대 졸 • 연무대중 육성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연무협의회 회원 • 국제 와이즈맨 회원 • 연무읍 농촌지도자회 회원 • 운영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논산군의회 부의장(후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연무읍 마산리 831-24 • 전화번호 (자) 741-5989 (사) 741-5353
성동면	 엄 경 윤(42.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한광고등공민학교 • 전국 쌀대단위 증산단지 논산군 회장 • 민정당 성동면 협의회장 • 충청남도 도정 평가위원 • 강경경찰서 위민봉사위원 • 강경경찰서 대공 지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성동면 정지리 477-39 • 전화번호 (자) 32-6493

출신지역	성명(생년월일)	경력사항	연락처
광석면	 윤종근(47.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대건고 졸 • 대건중·고 총동창회 이사 • 농촌지도소 광석지소 후원회장 • 광석면 4-H 후원회장 • 광석면 농어민후계자 후원회장 • 한국신탁금융(주) 이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광석면 항월리 438 • 전화번호 (자) 32-8392
노성면	 윤석주(34.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 대건고 졸 • 논산군 노성단위농협장 • 양잠 협동조합 논산지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노성면 하도리 311 • 전화번호 (자) 736-5800
상월면	 박해영(37.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성중 졸 • 통일민주당 논산지구당 부위원장 • 민주당 논산지구당 수석부위원장 • 논산지부 민주산악회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상월면 대우리 53 • 전화번호 (자) 32-4761

출신지역	성명 (생년월일)	경력사항	연락처
부적면	 김 영 운(3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고 졸 • 부적단위농협장 • 신정사회당 논산·공주 지구당 위원장 • 전국 농업기술자 협의회 논산군 지회 상임고문 • 총무위원회 위원장(전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부적면 부황리 155 • 전화번호 (자) 32-7263
연산면	 강 대 혁(4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대 졸 • 연산농협 이·감사 역임 • 인수중학교 교사 역임 • 연산 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연산의용소방대장 • 민방위대 소양교육 강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전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연산면 연산리 73-3 • 전화번호 (자) 34-2535
두마면	 김 성 중(45.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 졸 • 대한통운(주) 두계출장소 소장 • 새마을운동 계룡출장소 지회장 • 논산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 충남발전협의회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두마면 두계리 136 • 전화번호 (자) 33-8015

출신지역	성명(생년월일)	경력사항	연락처
별곡면	 김 종 일(47.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동중 졸 • 별곡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 • 대전지검 강경지청 보호관찰소 위원 • 별곡 농업협동조합 이사 • 별곡국교 조동분교 교육협의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별곡면 조동리 285-2 • 전화번호 (자) 33-9308
양촌면	 강 두 식(36.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대 졸 • 양촌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논산군 협의 회장 • 양촌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양촌면 신흥리 132 • 전화번호 (자) 741-3236
가야곡면	 이 태 세(47.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 농업고 졸 • 서울 용산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가야곡 산노리 16 • 전화번호 (자) 741-1929

출신지역	성명 (생년월일)	경력사항	연락처
은진면	 김 오 중(27.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대 졸 • 논산군정 자문위원 • 논산군 4-H 후원회장 • 충남 4-H 후원회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은진면 교촌리 산 36-1 • 전화번호 (자) 741-0090
채운면	 장 화 수(31.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 졸 • 논산 농지개량조합 수석이사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채운면 화정리 42 • 전화번호 (자) 742-1655

의 회 운 영 현 황

□ 회의 개최 현황

○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별 년도별	계		정 기 회		임 시 회		비 고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계	39	285	4	125	35	160	
91 년도	7	60	1	30	6	30	
92 년도	9	60	1	30	8	30	
93 년도	11	60	1	30	10	30	
94 년도	9	80	1	35	8	45	
95 년도	3	25			3	25	

○ 상임위원회 활동

위원회별 년도별	계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계	56	88	24	40	20	34	12	14
91 년도								
92 년도	17	33	7	15	6	14	4	4
93 년도	14	16	5	6	6	6	3	4
94 년도	20	34	9	16	6	12	5	6
95 년도	5	5	3	3	2	2		

○ 특별위원회 활동

회기별 년도별	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특정산업 폐 기물매립장 설치에 따른 대책 특별위원회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 업지역추가 지정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구역편 입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계	16	56	9	32	4	16	1	4	1	1	1	3
91년도	3	11	2	8	1	3						
92년도	4	17	2	10	1	3	1	4				
93년도	5	10	3	6	1	3			1	1		
94년도	4	18	2	8	1	7					1	3

○ 기타활동

회수 년도별	계		결산검사	
	회수	일수	회수	일수
계	4	74	4	74
91년도	1	17	1	17
92년도	1	20	1	20
93년도	1	20	1	20
94년도	1	17	1	17

□ 의안처리 현황(본회의)

○ 총 괄

구 분	접 수	처 리						비 고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철회	보류	
계	406	406	378	26	1	1		
조 례 안	소 계	148	148	139	8		1	
	제 정	36	36	32	4			
	개 정	102	102	97	4		1	
	폐 지	10	10	10				
규칙·규정·제정안	소 계	13	13	13				
	제 정	10	10	10				
	개 정	3	3	3				
예산 및 결산	31	31	16	15				
승 인	35	35	33	2				
보 고	17	17	17					
결 의 건 의 채택	39	39	38	1				
청 원	3	3	3					
설 명	4	4	4					
청 취	8	8	8					
결 정	39	39	39					
기 타	69	69	68		1			

○ 년도별 의안 처리 현황(91. 4. 15~95. 6. 30)

구 분	계	1991		1992		1993		1994		1995		
		정기회	임시회									
계	406	33	49	26	72	28	81	22	71		24	
조 례 안	소 계	148	21	9	3	23	13	25	11	31		12
	제 정	36	3	9		3	3	3	2	10		3
	개 정	101	17		3	18	9	17	9	20		8
	폐지및철회	11	1			2	1	5		1		1
규칙 규정안	소 계	13			3			6		4		
	제 정	10						6		4		
	개 정	3			3							
예산 및 결산	31	5	1	6	1	4	7	3	4			
승 인	35	3	6	1	11	3	6	1	4			
보 고	17	1	1	3	6	1	1	1	2		1	
결의 건의 채택	39	1	4	5	8	4	4	2	9		2	
청 원	3				3							
설 명	4		1				1		1		1	
청 취	8				1		3	2	1		1	
결 정	39	1	7	3	6	1	11	1	6		3	
기 타	69	1	20	2	13	2	17	1	9		4	

○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회기별	회의기간	부의 된안 건	심의결과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예산 결산	승 인	보 고	청 원	기 타
			계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보류 의결	부결									
제1회 임시회	91.4.15 ~4.16 (2일)	4	4	4			4						1		3	
제2회 임시회	91.6.12 ~6.14 (3일)	6	6	6			6					1			5	
제3회 임시회	91.7.22 (1일)	3	3	2		1	3					1			2	
제4회 임시회	91.9.16 ~9.24 (9일)	9	9	8	1		9				1	2	1		5	
제5회 임시회	91.10.14 ~10.21 (8일)	16	16	14		2	16					1			15	
제6회 임시회	91.11.18 ~11.23 (6일)	8	8	7	1		8		1			1			6	
제7회 정기회	91.12.2 ~12.31 (30일)	52	52	52			52	9	18	1	4	2	1		17	
제8회 임시회	92.2.11 ~2.13 (3일)	5	5	5			5					2		1	2	
제9회 임시회	92.3.11 ~3.13 (3일)	17	17	17			17		7	2				1	7	
제10회 임시회	92.6.1 ~6.3 (3일)	14	14	14			14	2	4			5			3	
제11회 임시회	92.6.29 ~7.4 (6일)	9	9	9			9	1			1	1			6	
제12회 임시회	92.7.23 ~7.24 (2일)	8	8	8			8	1	2			1			4	
제13회 임시회	92.10.12 ~10.21 (10일)	16	16	16			16		3			1		1	11	

회기별	회의기간	부의 된안 건	심의결과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예산 결산	승 인	보 고	청 원	기 타
			계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보류 의결	부결									
제14회 임사회	92.10.26 (1일)	2	2	2			2								2	
제15회 임사회	92.11.23 ~11.24 (2일)	7	7	7			7		2			1	1		3	
16회 정기회	92.11.25 ~12.24 (30일)	20	20	20			20		3		3	1	2		11	
제17회 임사회	93.2.1 ~2.2 (2일간)	7	7	7			7	2	2				1		2	
제18회 임사회	93.3.2 (1일)	2	2	2			2								2	
제19회 임사회	93.3.22 (1일)	2	2	2			2								2	
제20회 임사회	93.4.14 (1일)	2	2	2			2								2	
제21회 임사회	93.5.12 ~5.13 (2일)	5	5	3	1		5	1				1			3	
제22회 임사회	93.6.28 ~7.7 (10일)	16	16	13	2	1	16		3		1	1	1		10	
제23회 임사회	93.8.4 (1일)	3	3	3			3	1				1			1	
제24회 임사회	93.9.13 (1일)	2	2	2			2								2	
제25회 임사회	93.10. 21~10.28 (8일)	8	8	7	1		8		1		2				5	
제26회 임사회	93.11.16 ~11.18 (3일)	17	17	17			17		8	5		1			3	
제27회 정기회	93.11.25 ~12.24 (30일)	34	34	31	3		34	3	11	1	2	2	1		14	

회기별	회의기간	부의 된안 건	심의결과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예산 결산	승 인	보 고	청 원	기 타
			계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보류 의결	부결									
제28회 임사회	94.1.31 ~2.4 (5일)	7	7	7			7	1	2				1		3	
제29회 임사회	94.3.8 ~3.9 (2일)	8	8	7	1		8	2	2			1			3	
제30회 임사회	94.4.7 ~4.8 (2일)	4	4	4			4								4	
제31회 임사회	94.6.1 ~6.7 (7일)	5	5	3	2		5		4						1	
제32회 임사회	94.7.19 ~7.20 (2일)	6	6	6			6	1	4						1	
제33회 임사회	94.8.30 ~9.13 (15일)	25	25	23	2		25	6	5	1	1	1	2		9	
제34회 임사회	94.9.30 ~10.5 (6일)	8	8	8			8	1				1			6	
제35회 임사회	94.11.10 ~11.15 (6일)	4	4	4			4					1			3	
제36회 정기회	94.11.25 ~12.29 (35회)	25	25	23	2		25	2	9		5	1	1		7	
제37회 임사회	95.2.13 ~2.22 (10일)	6	6	6			6	2					1		3	
제38회 임사회	95.4.8 ~4.20 (13일)	11	11	10			11	1	6	1					3	
제39회 임사회	95.5.30 ~5.31 (2일)	3	3	3			3		2				1			
계		406	406	384	16	4	2	406	36	99	11	20	31	15	3	191

□ 상임위원회별 의안처리 현황

회기별	회의 기간	위 원 회 명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조 례 안							비 고			
				계	원 안 가 결	수 정 의 결	보 류 의 결	부 결	폐 지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예 산 결 산	승 인		보 고	청 원	건의문 (채택)
제10회 임사회	92.6.	총 무 위원회	11	11	8	2	1			11	1	3			4			1	2
	2~6.3	산 업 건설 위원회	2	2	2					2		1			1				
	(2일)	의 회 운영 위원회	3	3	3					3									3
제11회 임사회	6.29	총 무 위원회	3	3	2	1				3	1			1	1				
	~7.3	산 업 건설 위원회	1	1	1					1				1					
		의 회 운영 위원회	1	1		1				1		1							
		(5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3	3	2	1				3				1				
제12회 임사회	7.23	총 무 위원회	4	4	2	2				4	1	1			1				1
	(1일)	의 회 운영 위원회	1	1	1					1		1							
제13회 임사회	10.2	총 무 위원회	3	3	3					3		1			1	1			
	~10. 17	산 업 건설 위원회	8	8	8					8		3				2	1		2
		(16일)	의 회 운영 위원회	1	1	1					1		1						
제15회 임사회	11.23	총 무 위원회	3	3	3					3		1			1				1
	~11. 24 (2일)	산 업 건설 위원회	2	2	1		1			2						1			1

회기별	회의 기간	위 원 회 명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조 례 안							비 고			
				계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보류 의결	부 결	폐 지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예산 결산	승 인		보 고	청 원	건의 문 (채택)
제16회 임사회	92.12. 1~12. 11 (12일)	총 무 위원회	5	5	3	2				5		2		2	1				
		산 업 건설 위원회	4	4	1	2	1			4		1		2					1
		의 회 운영 위원회	2	2		2				2				2					
제17회 임사회	93. 2.1 (1일)	총 무 위원회	3	3	3					3	1	2							
		산 업 건설 위원회	1	1	1					1	1								
제21회 임사회	5.13 (1일)	총 무 위원회	1	1		1				1	1								
		산 업 건설 위원회	2	2	1	1				2	1				1				
		의 회 운영 위원회	6	6	6					6									6
제22회 임사회	7.2 ~7.6 (5일)	총 무 위원회	6	6	4	2				6		3		1	2				
		산 업 건설 위원회	2	2		1	1			2				1		1			
		의 회 운영 위원회	3	3	2	1				3				1					2
제23회 임사회	93.2.1 (1일)	총 무 위원회	2	2	2					2	1				1				
		산 업 건설 위원회	1	1	1					1						1			
제25회 임사회	10.22 ~10. 25 (4일)	총 무 위원회	1	1		1				1				1					
		산 업 건설 위원회	3	3	3					3		1		1					1
제26회 임사회	11.16 ~11. 18 (3일)	총 무 위원회	12	12	12					12		7	4		1				
		산 업 건설 위원회	3	3	3					3		1	1						1

회기별	회의 기간	위원 회명	부의 된안건	심의결과					조례안									비 고	
				계	원안 가결	수정의 결	보류의 결	부 결	폐 지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예산 결산	승 인	보 고	청 원		건의 문 (채택)
제27회 정기회	93.12. 6~12.	총무 위원회	17	17	15	2				17	2	10	1	2	1			1	
	20 (15일)	산업 건설 위원회	5	5	4	1				5		2		2				1	
		의회 운영 위원회	2	2	1	1				2				2					
28회 임시회	94. 2.2 (1일)	총무 위원회	1	1	1					1		1							
		산업 건설 위원회	2	2	2					2	1	1							
제29회 임시회	3.8 (1일)	총무 위원회	4	4	3	1				4	2	1		1					
제30회 임시회	4.8 (1일)	총무 위원회	1	1	1					1								1	
		산업 건설 위원회	1	1	1					1								1	
		의회 운영 위원회	1	1	1					1								1	
제31회 임시회	6.2 (1일)	총무 위원회	1	1		1				1		1							
		산업 건설 위원회	2	2	1	1				2	1	1							
제32회 임시회	7.19 (1일)	총무 위원회	3	3	3					3	1	2							
		의회 운영 위원회	2	2	2					2		2							
제33회 임시회	8.30 ~9.8 (10일)	총무 위원회	8	8	7	1				8	1	5		1	1				
		산업 건설 위원회	6	6	3	3				6	2	2	1	1					
		의회 운영 위원회	2	2	2					2	1			1					

회기별	회의 기간	위원 회명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조 례 안									비 고		
				계	원 안 가 결	수 정 의 결	보 류 의 결	부 결	폐 지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예산 결산	승 인	보 고	청 원		건의 문 (채택)	기 타
제34회 임사회	10.4 (1일)	총무 위원회	2	2	2					2	1				1					
		의회 운영 위원회	5	5	5					5	4	1								
제35회 임사회	11.10 ~11. 14 (5일)	총무 위원회	1	1	1					1					1					
		산업 건설 위원회	2	2	1	1				2								1	1	
제36회 정기회	12.9 ~12. 26 (18일)	총무 위원회	11	11	9	2				11	2	6		2	1					
		산업 건설 위원회	8	8	5	3				8	1	3		2						2
		의회 운영 위원회	2	2		2				2				2						
제37회 임사회	95.2. 21 (1일)	총무 위원회	2	2	2					2	2									
제38회 임사회	4.18 (1일)	총무 위원회	5	5	5					5	1	4								
		산업 건설 위원회	2	2	2					2		2								
제39회 임사회	5.30 (1일)	총무 위원회	2	2	2					2		2								
		산업 건설 위원회	1	1		1				1					1					
계			204	204	160	40	4			204	30	76	7	29	21	7	1	2	31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회 기 : 제4회 임시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우오중
 - 간 사 : 이태세
 - 위 원 : 강중선, 윤석주, 강대혁, 강두식, 김영운
- 활동기간 : 91.9.18~9.24
- 심의안건 : 9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요구액 : 6,111,459천원
 - 삭 감 액 : 32,500천원
 - 예 산 액 : 6,078,959천원

놀외향토제에 관한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5회 임시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장화수
 - 간 사 : 서평석
 - 위 원 : 강중선, 박해영, 김영운
- 활동기간 :
 - 1차 : 91. 10. 15 ~ 10. 21.
 - 2차 : 91. 11. 19 ~ 11. 22.
- 주요내용 :
 - 원안을 본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을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

□ 민원관련 현지방문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5회 임시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김오중
 - 간 사 : 윤종근
 - 위 원 : 송상현, 우오중, 이혁규, 윤석주, 김종일, 강두식, 이태세
- 활동기간
 - 1차 : 91. 10. 15 ~ 10. 21.
 - 2차 : 91. 11. 19 ~ 11. 22.
- 방문내용
 - 별곡면 양산리 골프장
 - 연산상수도 취수장의 오염실태와 방지책
 - 부적면 마구평 1리 분구
 - 부적면 석재공장의 공해문제
 - 부적면 마구평과 탑정리간 농촌소득원 도로 개설
 - 육군항공학교 이전반대 건의문 채택
 - 광석면 금강수계 하천정비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7회 정기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강두식
 - 간 사 : 김성중
 - 위 원 : 강중선, 우오중, 윤석주, 김종일, 이태세, 김오중, 장화수.
- 활동기간 : 91. 12. 6 ~ 12. 24
- 심의안건 :
 -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정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 회 기 : 제13회 임시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강두식
 - 간 사 : 이태세
 - 위 원 : 송상현, 윤석주, 강대혁, 김오중.
- 활동기간 : 92. 10. 21 ~ 11. 3
- 주요기능
 -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에 설치하려는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따른 상황설명 청취 및 반대건의문 작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16회 정기회
- 구성현황(9명)
 - 위원장 : 윤석주
 - 간 사 : 이태세
 - 위 원 : 송상현, 강중선, 우오중, 서평석, 윤종근, 김영운, 강대혁.
- 활동기간 : 92. 11. 25 ~ 12. 15
- 심사안건
 -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22회 임시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강중선
 - 간 사 : 엄경윤
 - 위 원 : 송상현, 박해영, 김영운, 강대혁, 서평석, 윤종근, 이태세.
- 활동기간 : 97. 7. 2 ~ 7. 7
- 주요기능 :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지구 추가지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22회 임시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송상현
 - 간 사 : 김종일
 - 위 원 : 김오중, 우오중, 장화수, 윤석주, 김성중.
- 활동기간 : 93. 7. 2.
- 주요기능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추가지정 추진을 위한 건의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25회 임시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엄경윤
 - 간 사 : 김성중
 - 위 원 : 윤종근, 김종일, 이태세.
- 활동기간 : 93. 10. 27
- 주요기능
 -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27회 정기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이태세
 - 간 사 : 윤종근
 - 위 원 : 김오중, 우오중, 장화수, 김영운, 강대혁, 강중선, 김종일.
- 활동기간 : 93. 11. 25 ~ 12. 20
- 주요기능
 -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33회 임시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강두식
 - 간 사 : 엄경윤
 - 위 원 : 송상현, 우오중, 윤종근, 박해영.
- 활동기간 : 94. 9. 9
- 주요기능
 -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36회 정기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김오중
 - 간 사 : 엄경윤
 - 위 원 : 송상현, 강중선, 서평석, 윤종근, 박해영, 김성중, 강두식.
- 활동기간 : 94. 11. 25 ~ 12. 19
- 주요기능
 -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본회의 회의록

□ 제1회 임시회

- 회 기 : 1991. 4. 15 ~ 4. 16(2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 ① 의장·부의장 선거등 3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1. 4. 15 ~ 4. 16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장·부의장 선거 ○제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 ○논산군수의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장 : 임성규 의원 ○부의장 : 강중선 의원 ○91. 4. 15 ~ 91. 4. 16(2일간) ○논산군수의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

□ 제2회 임시회

- 회 기 : 1991. 6. 12 ~ 6. 14(3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 ① 제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1. 6. 12 ~ 6. 14 (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 ○논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 건 ○소정업무 현황 설명에 관한 건 (계룡출장소) ○90년도 예산결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 6. 12 ~ 91. 6. 14(3일간) ○논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2차 본회의에서 현황청취 ○김오중의원, 전기영 지점장, 김종선 전무 선임.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년도 군도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군정에 관한 현황청취 ○소정업무현황 설명에 대한 청취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부담행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진면 연서 → 시묘간(군도1호) - 부적면 충곡 → 신평간(군도2호) - 부적 마구평 → 부황(군도2호) - 연무 고내리 (군도3호) - 노성면 구암리 → 상월면 월오리 (군도4호) ○기획실외 16개 실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 ○계룡출장소 업무보고 청취 ○기획실외 16개 실과사업소 ○계룡출장소

제3회 임시회

- 회 기 : 1991. 7. 22(1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 ① 제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1 . 7. 22 (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건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 7. 22(1일간) ○전무남, 오재욱 선출 ○보류

□ 제4회 임시회

- 회 기 : 1991. 9. 16 ~ 9. 25(10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 ① 제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1. 9. 16 ~ 9. 25 (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 논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 관리에 대한 조례안 ○ 제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제2회 추경예산안 ○ 논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 ○ 새질서·새생활실천 결의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9. 16 ~ 9. 19(4일간) ○ 5억 지방채 발행 승인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확대와 녹지의 효율적 관리 ○ 당초 9.16 ~ 9.19까지 4일간에서 9.16 ~ 9.25까지 10일간으로 연장 ○ 위원장 : 우오중 ○ 간 사 : 이태세 ○ 위 원 : 강중선 의원, 윤석주 의원 김영운 의원, 강대혁 의원 강두식 의원 ○ 요구액 6,111,459천원 ○ 삭감액 32,500천원 ○ 확정액 6,078,959천원 ○ 내용 별첨 ○ 결의문 별첨

논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의원은 논산군민의 대표이면서 공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과 도덕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주민의 모범이 된다.
1.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욕구와 희망하는 바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책무를 다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91년 9월 25일

논산군의회 의원 일동

새질서 · 새생활 실천 결의문

(새생활 · 새질서 실천에 따른 우리의 결의)

우리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질서 · 새생활 실천」에 솔선 참여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장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의원은 폭력, 범죄, 무질서 심리를 추방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선다.
1. 우리 의원의 호화 · 사치 · 낭비풍조를 추방하여 근검절약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1. 우리 의원은 공중도덕과 질서를 잘 지켜 민주군민 정신함양에 앞장선다.

1991년 9월 25일

논산군의회 의원 일동

□ 제5회 임시회

- 회 기 : 1991. 10. 14 ~ 10. 21(8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1. 10. 14 ~ 10. 21 (8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 ○ 놀뢰향토제에 관한 조례안 ○ 논산교육청 업무보고의 건 ○ 벌곡면 양산리 골프장 설치에 관한 현지 방문의 건 ○ 연산 상수도 취수장 주변환경 오염으로 이전에 관한 현지 방문의 건 ○ 마구평1리 분구 및 석재공장 공해와 탐정선 산업도로 계획 타당성에 관한 현지방문의 건 ○ 육군항공학교 이전반대에 관한 현지 방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10. 16 ~ 10. 21(8일간) ○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장화수 의원 • 간 사 : 서평석 의원 • 위 원 : 강중선 의원, 박해영 의원, 김영운 의원 ○ 업무보고 청취 ○ 김종일 의원의 제안설명 ○ 강대혁 의원의 제안설명 ○ 김영운 의원의 제안설명 ○ 윤석주 의원의 제안설명(건의문)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p>○금강수계 하천정비 사업에 관한 현지방문의 건</p> <p>○92 군도포장 실시설계용역 채무 부담행위 승인신청의 건</p> <p>○놀피향토제에 관한 조례안</p> <p>○민원관련 현지방문의 건</p>	<p>※현지방문 특별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오중 의원 • 간 사 : 윤종근 의원 • 위 원 : 송상현 의원, 우오중 의원, 이혁규 의원, 윤석주 의원, 강대혁 의원, 김성중 의원, 김종일 의원, 강두식 의원, 이태세 의원 <p>○윤종근 의원 제안설명</p> <p>○2억3천3백만원 용역설계비 채무 부담 행위를 원안대로 승인</p> <p>○특별위원회의 보류 요구로 연기</p> <p>○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위해 보류</p>

□ 제6회 임시회

- 회 기 : 1991. 11. 18 ~ 11. 23(6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6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1. 11. 18 ~ 11. 23 (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 ○ 논산읍 관촉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건 ○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 놀피향토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놀피향토제에 관한 조례안 ○ 민원관련 현지방문 결과보고 ○ 육군항공학교 이전반대에 따른 건의 문 채택의 건 ○ 금강수계 준설 및 승상공사 조기 발 주 건의문 채택의 건 ○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11. 18 ~ 11. 23(6일간) ○ 논산읍 관촉리의 낙후된 환경개선과 관광지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 심 의하여 원안 가결함. ○ 의원들의 심사를 위해 보류 ○ 특별위원회 위원장(장화수의원) 심 사보고 ○ 논산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개정 (놀피향토제를 홀수년도에 실시함) ○ 특별위원회 위원장(김오중 의원) 결 과보고 ○ 육군항공학교가 논산군 노성면으로 이전함을 부적하여 타지역으로 이전 해 줄 것을 건의(건의문 별첨) ○ 붕괴위험이 있는 금강수계의 준설과 승상공사를 조기에 발주해 줄 것을 건의(건의문 채택) ○ 승인요청 40종 73점중 38종 71점 승인

육군항공학교 이전반대 건의문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육군항공학교가 충남 논산군 노성면으로 이전함은 다음과 같이 부적합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충남 논산군 노성면은 역사적·민족적 전통이 이어지는 고적과 문화재등이 산재해 있고,
2. 농사를 기피하고 이농현상이 나타나는 이때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대대로 물려받은 농사를 지키는 농민들의 생활근거지로서,
3. 전답·과수원등 생산성과 이용성이 높은 옥토의 평야지대로 농산물 소득이 높은 지역이며,
4. 국가적으로도 이런 생산성 높은 지역을 선택함보다 주민들이 소음공해등으로 시달리지 않는 불모지나 구릉지역을 택하여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이유로 논산군민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선량한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논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금강수계 준설 및 승상공사 조기발주 건의문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충남 논산군 광석면 석성천 및 덕포천 준설 및 승상공사를 시급히 시행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1987년도 이곳 제방이 붕괴되어 논산군 성동면 일대가 물바다가 되어 참사를 당한 적이 있으며,
2. 부여 관할지역이 기히 준설 및 승상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제방이 낮은 이 두 하천은 20~30mm의 강우량만 되어도 범람의 우려가 있으며,
3. 만약 이 하천이 범람을 한다면 광석면 일대의 전 농경지와 농가가 침사됨이 명확하고,
4. 장마가 시작되면 이곳 모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하기에,

따라서 사후처방보다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공사를 시행하며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제7회 정기회

- 회 기 : 1991. 12. 2 ~ 12. 31(30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등 36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1. 12. 2 ~ 12. 31 (3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 12. 2 ~ 12. 31(30일간) ○구성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송상현 의원 • 간 사 : 강대혁 의원 • 위 원 : 서평석 의원, 윤종근 의원, 이혁규 의원, 박해영 의원, 김영운 의원 ○구성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강두식 의원 • 간 사 : 김성중 의원 • 위 원 : 강중선 의원, 우오중 의원, 윤석주 의원, 김종일 의원, 이태세 의원, 김오중 의원, 장화수 의원 ○요구액 : 61,239,000천원 증 액 : 3,120,608천원 확정액 : 64,359,608천원 ○기획실외 17개 실·과 업무보고 청취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논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91종지세 재해감면 결정승인의 건 ○91년도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논산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91.12.16~12.19(3일간) ○대상기관 : 15개 실·과, 2개사업소 ○자료제출 요구 : 102건 ○보류 ○보류 ○917필지의 249만 5천㎡의 33%에 해당하는 것을 감면 ○분뇨처리장 용지 815평 취득승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총예산액 : 569억 66,441천원 ○세 입 : 567억 80,631천원 ○세 출 : 465억 2,064만원 ○이 월 : 102억 59,991천원 승인 ○일반회계 95,786천원 증액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감 518천원)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증 1,606천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논산군의회 포상 조례안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논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논산군 리장정수 및 관리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지방세입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논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논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액 : 61,239,730천원 ○삭감액 : 339,140천원 ○확정액 : 60,900,590천원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논산군의회에서 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함. ○채택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의료보호사업의 전반적인 심의사항 규정하고 대불금 분할상환방법 개정 ○행정동리 453개를 467개로 증구 ○대상공무원을 기능직까지로 확대하며 정수포상금을 정수액의 5/100로 지급. ○향교재산중 농지·임야의 세율로 1/100을 적용하며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 차량·중기·임목·항공기이고 면제세목은 재산세이며 시효는 94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원안 가결함.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산군 도시정비정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균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균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균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균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주차장에 대한 균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균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거에 따른 충분한 보상으로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 ○2000cc이하 보철용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상이군경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함. ○면제규정이 불필요한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과 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를 원안가결함. ○지방세법 제5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한 소방공동시설세 삭제하는 내용을 원안가결함.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균세과세 면제에 관한 시한 94년 12월 31일로 연장 ○실효성 상실한 새마을 공장 등 삭제하고 명칭을 논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균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 제5조의 2항의 개정으로 인한 소방공동시설세 삭제 ○지방세법 제5조 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소방공동시설세 삭제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논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세 조례개정조례안 ○논산군 은진특별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논산군 가야곡 일반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논산군 연산 특별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5조 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소방공동시설세 삭제 ○적용시한 연장 :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 연장 :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 연장 : 94년 12월 31일까지 ○소방공동시설세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징수규정과 주민세의 전액 세수조정 등 세제상 일부 미비점 보완 ○관리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여 회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관리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여 회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관리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여 회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 제8회 임시회

- 회 기 : 1992. 2. 11 ~ 2. 13(3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2. 2. 11 ~ 2. 13 (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92군정에 관한 업무계획청취의 건 ○ 공유재산 수의계약 불하요구청원 ○ 92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 청취 ○ 92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2. 11 ~ 2. 13(3일간) ○ 청취하기로 의결함. ○ 청원자 : 논산군 연무읍 마산리 378 (조 홍 영) ○ 청원내용 : 재상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수의계약 불하요구 ○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논산군수에게 통보 ○ 기획실외 16개 실·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 ○ 신규취득 1종 2점 승인 (대형승용차 2대) ○ 토지의 규모·형광 등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매각처분하여 공익사업 행정목적 수행에 대체

□ 제9회 임시회

- 회 기 : 1992. 3. 11 ~ 3. 13(3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6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2. 3. 11 ~ 3. 13 (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의안 ○ 논산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 ○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3. 11 ~ 3. 13(3일간) ○ 관계공무원 92. 3. 12 ~ 13(3일간) 출석요구 ○ 개원 1주년을 기하여 주민에게 의정 활동상황 홍보를 위해 원안가결함. ○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 총무위원회 9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의회 운영위원회 5명.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 처리 ○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 상임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 ○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 본회의에서 선거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 추가 ○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여비지급 추가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p>○논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p> <p>○논산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p> <p>○논산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p> <p>○논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 례안</p> <p>○합동간이주차장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청원</p> <p>○군정에 관한 질문</p> <p>○논산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폐지 조 례안</p> <p>○논산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p>	<p>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기구 → 의회사무과 • 간사 → 사무과장 <p>○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공인 추가</p> <p>○리장자녀 장학금 확대 지급 (리장수의 10% → 15% 이내로)</p> <p>○공유재산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p> <p>○논산보건소 신축으로 인한 합동간이주 차장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건으 로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p> <p>○서평석의원의 8명 군정질문 (군정질문 답변 참조)</p> <p>○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 거 폐지</p> <p>○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폐지</p>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p>○논산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p> <p>○논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p>	<p>○상임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위원회 송상현 의원, 강중선 의원, 우오중 의원, 윤종근 의원, 김영운 의원, 김성중 의원, 김종일 의원, 강두식 의원, 김오중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서평석 의원, 이혁규 의원, 윤석주 의원, 박해영 의원, 강대혁 의원, 이태세 의원, 장화수 의원. - 운영위원회 강중선 의원, 서평석 의원, 김영운 의원, 강두식 의원, 이태세 의원. <p>○총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영운 의원 <p>○산업건설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강대혁 의원 <p>○의회운영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서평석 의원

□ 제10회 임시회

- 회 기 : 1992. 6. 1 ~ 6. 3(3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1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2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2. 6. 1 ~ 6. 3 (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논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 논산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논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 ○ 논산군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6. 1 ~ 6. 3(3일간)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결산검사 위원회 선임 및 운영방법으로 위원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를 삭제 ○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키 위해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 ○ 보건소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및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 보완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산군 보건진료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92 중요재산취득승인의 건 ○균유재산처분승인의 건 ○계백장균유적전승지 토지매입 승인의 건 ○논산도시계획(운동장, 학교) 변경안에 관한 의견의 건 ○논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 승인의 건 ○92년도 정부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 ○백제권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충남계룡출장소 설치로 왕대보건진료소 및 광석보건진료소란 삭제 및 군내 일부 보건진료소 위치 개정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 농기계 부품센터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료수리금액 상향조정 (1,000원 미만 → 3,000원 미만) ○논산읍과 강경읍의 쓰레기매립장 지역의 토지를 취득 (논산읍 75,643㎡, 강경읍 6,731㎡) ○균유택지 59가구 71필지 14,918㎡ 처분 ○부적면 충곡리 7,419㎡ ○연산면 고정리 11,501㎡ ○공설운동장 89,869㎡와 충남체육고 23,200㎡를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 ○논산군 두마면 도시계획고시지역 일원 (53,614㎡) ○총 25종 96점중 신규 14종 41점 대체 3종 9점, 관리전환 6종 16점을 승인 ○논산지역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

□ 제11회 임시회

- 회 기 : 1992. 6. 29 ~ 7. 4(6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1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2. 6. 29 ~ 7. 4 (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논산군수 출석요구의 건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업무현황 청취 ○ 군정에 관한 질문 ○ 논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예고에 대한 고시안 승인의 건 ○ 논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 논산군 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의 건 ○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6. 29 ~ 7.4(6일간) ○ 송상현 의원, 우오중 의원, 서평석 의원, 윤종근 의원, 윤석주 의원, 박해영 의원, 김성중 의원, 이혁규 의원, 장화수 의원 (9인) ○ 논산군수 출석 요구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업무현황 청취 ○ 군정에 관한 질문 (서평석 의원, 김오중 의원, 강두식 의원) ○ 논산군 두마면 지역에 도시계획세 부과 ○ 위원회 구성중 지역대표를 직능대표로 수정의결 ○ 계획년도 2011년 계획면적 48.85km²(논산읍, 은진면, 채운면 일부) 인구는 12만명, 원안가결 ○ 요구액 73,108,517천원 ○ 삭감액 710,465천원 ○ 확정액 72,398,052천원

□ 제12회 임시회

- 회 기 : 1992. 7. 23 ~ 7. 24(2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1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2. 7. 23 ~ 7. 24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논산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 급조례안 ○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의 건 ○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논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전국 시·군·구의회 비교견학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7. 23 ~ 7. 24(2일간) ○ 취득승인 : 3필지 149,807㎡ ○ 처분승인 : 19필지 47,047㎡ ○ 불 승 인 : 처분 2필지 375㎡ ○ 물품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 학업성정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17,350㎡(5,248평)을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로 편입 ○ 대표위원 : 논산군의회 의원 강두식 ○ 위 원 : 논산군의회 의원 이태세 ○ 위 원 : 농협연무지점장 전기영 ○ 의회운영위원회 : 5인 → 7인 ○ 일정 및 세부계획 운영위원회에 위임.

□ 제13회 임시회

- 회 기 : 1992. 10. 12 ~ 10. 21(10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1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5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2. 10. 12 ~ 10. 21 (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군정에 관한 질문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소정업무 현황 설명의 건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 논산군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계룡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의 건 ○ 계룡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 결정에 대한 의견의 건 ○ 특정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따른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10.12 ~ 10. 21 (10일간)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군정에 관한 질문 (김오중 의원, 서평석 의원, 이태세 의원) ○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설명 ○ 논산군수 정운영 답변 ○ 울곡 3060사업 도로부지 처분 군민회관 진입로 부지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등 ○ 93.12.31일까지 사업기간 연장 ○ 상수도 요금율 및 업종을 조정 ○ 계룡도시계획구역내 호남고속도로대로 완충녹지 변경 ○ 계룡도시계획 구역내 왕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구역 결정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3-8번지(논산군 상수원)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허가신청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재해대책법 운영에 따른 건의문 채택 ○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의안 ○ 벼수매가 및 수매량 인상요구 건 의문 채택의 건 ○ 논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례안 ○ 논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에 관한 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우박피해 농민에게 실질적 보상건의 ○ 92년도 1년간의 의정활동 상황 주민에게 보고 ○ 수매가 13% 인상과 수매량 1천만석으로 늘려 줄 것을 건의 ○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 ○ 논산읍 취암리 부국아파트 정문부터 논산읍사무소 앞까지 (50m)

□ 제14회 임시회

○ 회 기 : 1992. 10. 26(1일간)

○ 출석의원 : 16명

○ 부의안건

① 제1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2. 10. 26 (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금산군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따른 반대 건의요구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10. 26(1일간) ○ 논산군의 상수원인 충남 금산군 오항리 산 103-8번지 일대 특정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건의요구 (건의서 별첨)

금산군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따른 반대건의 요구의 건

충남 금산군 오항리 산 103-8번지 일대에 주식회사 천아대표 송영숙 외 1인이 특정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허가 신청한 바 이 장소에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게 될 경우 우리 논산군에서는 논산천의 상류원천의 발원지로서 논산천이 완전히 오염될 뿐만 아니라 식수원이며 농사원인 논산천의 탐정저수지가 수백년 나아가서 수천년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우리 논산군의회에서는 군민과 더불어 이의 설치를 결사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아름다운 강산의 물은 맑은 물로 맑은 물의 보존 차원에서,
2.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특히 논산천 상류는 특정보존지역으로 지정 특별보호되는 지역으로써 매립장과 불과 20km지점으로써 지금껏 청정보존지역으로 가꾸온 것이 하루아침에 황폐화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3. 1일 288톤 연간 924백톤의 산업폐기물을 15년간 매립할 경우 오·폐수의 상수원 유입은 물론 군민의 생존권의 보존차원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결사 반대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0월 26일

논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제15회 임시회

- 회 기 : 1992. 11. 23 ~ 11. 24(2일간)
- 출석의원 : 16명
- 부의안건

① 제1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2. 11. 23 ~ 11. 24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 논산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93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 ○ 92 농지세 재해감면 결정의 건 ○ 논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11. 23 ~ 11. 24(2일간) ○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두식 보고 ○ 논산군의회 사무직원의 정수가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신규취득 11종 194점, 대체취득 및 처분 8종 33점 ○ 92. 10. 17 우박피해 및 재해농가 농지세 감면 ○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조정 (전문의원 695,000원, 일반의원 614,000원)

□ 제16회 정기회

- 회 기 : 1992. 11. 25 ~ 12. 24(30일간)
- 출석의원 : 16명
- 부의안건

①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등 18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2. 11. 25 ~ 12. 24 (3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 군정업무 보고의 건 ○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3 세입세출 예산안 ○ 군정보고 및 질의답변 ○ 계룡출장소 소정업무 보고 ○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12. 25 ~ 12. 24(30일간) ○ 11.26부터 11.30까지 4일간 청취 ○ 우오중 의원, 송상현 의원, 강중선 의원, 윤종근 의원, 김영운 의원, 강대혁 의원, 이태세 의원, 윤석주 의원, 서평석 의원 (9명) ○ 장화수 의원, 김오중 의원, 강두식 의원, 김종일 의원, 김성중 의원, 박해영 의원, 강대혁 의원, 김영운 의원, 서평석 의원 (9명) ○ 제안설명 청취후 상임위원회 회부 ○ 기획실외 16개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 ○ 계룡출장소 업무보고 청취 ○ 92. 12. 21 ~ 12. 23(3일간) 15개과 2개 사업소 및 각 읍면 대상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 시가지 조성사업, 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의 건 ○ 논산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무상사용 허가승인의 건 ○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 논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9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후 각 상임위원회 회부 ○ 계룡도시계획구역내 신도시건설 단계별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시가지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을 일부 변경 ○ 군세과세면제 경감신청을 받은 사항을 조사 결정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신설 ○ 학교법인이 향해 연습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면세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군에 귀속된 재산 주민에게 무상대여 ○ 세입수납액 : 65,033,146,126원 ○ 세 출 액 : 55,007,272,890원 원안대로 승인 ○ 농어촌 도로를 점용 또는 무단점유자에게 점용료 징수 ○ 요구액 : 1,414,448천원 ○ 삭감액 : 15,934천원 ○ 조정액 : 1,398,514천원 ○ 요구액 : 76,700,206천원 ○ 삭감액 : 362,356천원 ○ 조정액 : 76,337,850천원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쌀수입개방에 관한 반대 결의안 ○ 금산군 특정산업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반대건의 요구의 건 ○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중선 의원, 송상현 의원, 서평석 의원, 우오중 의원, 윤종근 의원, 윤석주 의원, 박해영 의원, 김영운 의원, 강대혁 의원, 김성중 의원, 김종일 의원, 강두식 의원, 이태세 의원, 김오중 의원, 장화수 의원(15명) ○ (건의문 별첨) ○ 우리 논산군의 상수원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대 건의 (건의문 별첨)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오중 보고

쌀수입개방에 관한 반대건의문

1. 우리는 흙에서 태어난 자손들로서 “농자 천하지 대본”의 지속과 보전을 위하여 쌀수입 개방을 적극 반대한다.
1. 우리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쌀수입개방을 적극 반대한다.
1. 우리는 낙후된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쌀수입개방을 적극 반대한다.
1. 우리는 만일 쌀시장이 개방될 때에는 농민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극한 투쟁도 불사한다.

논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금산군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설치에 따른 반대건의 요구

1.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아름다운 강산의 맑은 물 보존 차원과,
2.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특히 논산천 상류는 청정보존지역으로 가꾸어온 것이 하루아침에 황폐화 됩니다.
3. 또한 1년도 아닌 15년이란 장기간에 특정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폐수의 상수원 유입은 물론,
4. 군민의 생존권의 보존차원에서도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결사반대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2월 24일

논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제17회 임시회

- 회 기 : 1993. 2. 1 ~ 2. 2(2일간)
- 출석의원 : 16명
- 부의안건

① 제17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2. 1 ~ 2. 2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 정의 건 ○ 93 군정업무계획 보고 ○ 93 소정업무계획 보고 ○ 논산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안 ○ 논산군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군 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 논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2. 1 ~ 2. 2.(2일간) ○ 논산군수 정운영 보고 ○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보고 ○ 보건소장 직급 조정(지방의무서기 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 ○ 사회복지사업 원활을 위해 종교단 체 의료법에 대한 면세 ○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면세 혜택 ○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 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효 율적인 운영

제18회 임시회

- 회 기 : 1993. 3. 2(1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1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3. 2 (1일간)	○ 제1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 ○ 논산군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 93. 3. 2 (1일간) ○ 산업건설위원회에 엄경윤 의원 선임

제19회 임시회

- 회 기 : 1993. 3. 22(1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1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3. 22 (1일간)	○ 제1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 정의 건 ○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의안	○ 93. 3. 22(1일간) ○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에게 홍보 및 수 렴을 위해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제20회 임시회

- 회 기 : 1993. 4. 14(1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2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4. 14 (1일간)	○ 제2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 정의 건 ○ 의장·부의장 선거	○ 93. 4. 14(1일간) ○ 의 장 : 임성규 의원 부의장 : 서평석 의원

□ 제21회 임시회

- 회 기 : 1993. 5. 12 ~ 5. 13(2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6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5. 12 ~ 5. 13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논산군 건축조례안 ○ 논산, 연산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논산군의회 의원 김오중 의원 사직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5. 12 ~ 5. 13(2일간) ○ 김영운 의원, 김성중 의원 ○ 필요재산의 취득, 불요재산의 매각 처분, 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교환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조례로 정함 ○ 건축허가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함. ○ 논산 : 대로 2-1호에서 3-3호(논산천 제방) 도로 우회하여 도심교 통량 분산. 4호, 1-2호 위치 및 면적 변경 ○ 연산 : 1호 (대로 1-1호) 확장 및 선형변경으로 위치변경 대로 1-1과 중로 2-7(별곡면 입구) 접목지점 위치 및 면적 변경 ○ 부결

□ 제22회 임시회

- 회 기 : 1993. 6. 28 ~ 7. 7(10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등 14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6. 28 ~ 7. 7 (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석주 의원 외 4인)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제의) ○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증원 동의안 (의장제의) ○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논산군수 제출) ○ 서평석 논산군의회 운영위원장 사직의 건 ○ 논산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6. 28 ~ 7. 7(10일간) ○ 93. 6. 28부터 7. 2까지 5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토록 의결 ○ 엄경윤 의원, 서평석 의원, 윤종근 의원, 강증선 의원, 이태세 의원, 송상현 의원, 강대혁 의원, 박해영 의원, 김영운 의원 등 9명으로 구성 ○ 윤석주 의원, 김종일 의원, 김성중 의원 등 3명 선임 ○ 엄경윤 의원 1명 증원 의결 ○ 논산군수 군정에 관한 설명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 13명의 찬성으로 서평석 논산군의회 운영위원장 사직 의결 ○ 강두식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지역 추가 지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현 의원 외 5인) ○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 ○ 논산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상현 의원, 우오중 의원, 윤석주 의원, 김종일 의원, 김오중 의원, 김성중 의원, 장화수 의원 등 7인으로 구성 ○ 신규취득 8종 13점 대체취득 및 처분 8종 20점 ○ 학문 전공자 - 포괄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 과정 포함 • 선발확정기준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 읍면별 소재지중 강경읍 남교리 81-3을 76-1로 개정 ○ 두마면 남선리가 11개리에서 15개리로 증설(정장리, 부남리, 석례리, 용동리 삽입) ○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편입된 사유 재산 매입 및 노후된 연산 농민상담소를 개축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공유임야재산을 매각.

□ 제23회 임시회

- 회 기 : 1993. 8. 4(1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논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4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8. 4 (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외) ○ 논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 논산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8. 4(1일간) ○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산군의 조례로 제정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함 ○ 강경 공공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 ○ 도시 자연공원 721,403㎡ 중 일부 1,204㎡를 수도시설 배수시설로 변경

□ 제24회 임시회

- 회 기 : 1993. 9. 13(1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육군항공학교 비행연습장 설치반대 탄원서 제출건 등 2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9. 13 (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육군항공학교 비행훈련장 설치 반대 탄원서 제출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9. 13(1일간) ○ 탄원서 별첨

탄 원 서

존경하는 _____ 님

취임없이 국민을 위하고 아끼는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군민과 더불어 문민정부의 환경을 간직한 채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 노성면지역에 부지를 정한 육군항공학교는 최초에 전라북도 고창에 두려 하였다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부여, 공주 지역으로 다시 정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당국에서는 공청회 또는 군민의 뜻을 헤아려 보지도 않은채 본군 노성면지역 (읍내, 송당, 병사)에 42만평의 이전 계획을 전격 발표하고 주민, 지주들을 상대로 설득 회유에 나섰으며 비밀리에 두더지작전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하자 노성면민은 이전반대를 위한 총궐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논산군 각지역에서도 지원하게 되었으며 노성면민의 시퍼렇게 멍든 가슴은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채 살기 좋은 인심을 찾아볼 수 없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공학교에서는 이론교육만을 시키고 훈련은 조치원과 전주지역의 훈련장을 사용하게 되므로 소음공해는 거의 무관하며 추가훈련장 건설은 예산 및 계획 측면에서도 어긋난다는 내용의 사실규명 공문서로 군의 명예를 걸고 91. 12. 12 논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육군항공감과 항공학교장이 본군 의원간담회에서 군내 타지역에 유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본군 가야곡면과 성동면 지역에 훈련장을 건설한다는 사업실시계획(93. 8. 11.

국방부고시 제1993-22호)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군사정부도 아닌 문
민정부에서의 발상은 군민을 저버리는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논산군의회에서는 범군민 반대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논산군의회 의원직을 걸고 노성항공학교는 물론 비행훈련장 설치를 결사반
대하며 다음과 같이 탄원하오니 저희 논산군민을 저버리지 마시고 원래대로
평온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조상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생활터전을 육군항공학교 비행훈련장 설치
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둘째 : 한대의 헬기가 앓고 뜨는 것만으로도 학교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오는 것을 경험한 우리들로서는 자녀 교육상 결사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 소음과 매연·대기 등의 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이 어려워
지고 특히 미곡 및 기타 농작물 생산과 가축사육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절대 반대합니다.

넷째 : 자손된 도리로서 수십대에 걸쳐 모셔온 조상의 산소를 지키며 조상님
의 발자취를 버려두고는 차마 고향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다섯째 : 인심 좋고 평온하게 살아온 노성면민에서부터 논산군민 전체의 가슴
을 아프게 하고 지역총화를 분열시켜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여섯째 : 신뢰하고 의지해온 국방정책을 당국의 약속불이행으로 우리 국민을
실망을 시켜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곱째 : 육군항공학교와 비행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를 다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여덟째 : 국가안보라는 불모로 고향땅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군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본군에 육군항공학교 비행훈련장 설치를 결사반대 탄원합니다.

1993. 9.

논산군의회	의장	임성규
부	의장	서평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두식
의원		송상현
”		강중선
”		우오중
”		엄경윤
”		윤종근
”		윤석주
”		박해영
”		김성중
”		김종일
”		이태세
”		김오중
”		장화수

□ 제25회 임시회

○ 회 기 : 1993. 10. 21 ~ 10. 28(8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7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10. 21 ~ 10. 28. (8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계룡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 건의 건 ○ 논산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 안 ○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93년산 추곡수매에 관한건의 요구의 건(강대혁 의원 외 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10. 21 ~ 10. 28(8일간) ○ 9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요구액 : 1,733,596천원 ├ 삭 감 액 : 19,640천원 └ 예 산 액 : 1,713,966천원 ○ 예결특위 구성(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경운 의원, 김성중 의원, 김종일 의원, 이태세 의원, 윤종근 의원 ○ 계룡도시계획을 일부 변경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 ○ 조례 제8조 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 ○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 : 82,507,699천원 └ 세출 : 82,507,699천원 ○ 건의문 별첨

93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문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93년산 추곡수매량 및 추곡값 결정에 있어 냉해피해가 농가에 대한 지난해 수준의 소득보상과 쌀자급유지를 위해 올해 추곡수매값을 14% 이상 인상하고 전량 수매해줄 것을 건의한다.

농가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쌀 수매값은 최소한 생산비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생산자가 확대 재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소득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9. 15 논벼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금년 여름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냉해피해로 올해 쌀생산 추정량은 52만 9천석으로 지난해 생산량 56만5천석 대비해서 3만 6천석의 감소가 추정되며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대, 인건비 등 영농비용이 지난해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농민들에게 추곡수매를 통해 소득보장을 해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냉해피해 농가를 위해 냉해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희망전량을 수매해 주고 수매등급 기준을 하향 조정, 냉해로 품질이 저하된 피해곡도 정부수매가 가능하도록 잠정등외 등 등급을 조정하고 저등급 수매벼도 소득이 보장되는 선에서 수매가를 조정해 주기를 건의한다.

이에 대해 UR협상에서 쌀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와 공동보조를 취해오던 일본이 올해의 흉작을 계기로 쌀시장을 개방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내년도에도 철도요금을 비롯한 우편요금, 담배값, 기름값, 대학등록금, 의료보험료 수가등 각종 요금까지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견되어 농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더해주고 있는 바,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되살리고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에 젖어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전량수매와 추곡수매값 14% 이상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한다.

1993년 10월 28일

논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제26회 임시회

- 회 기 : 1993. 11. 16 ~ 11. 18(3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논산군자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7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11. 16 ~ 11. 18 (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논산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논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논산군 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11. 16 ~ 11. 18(3일간) ○ 위원회 부위원장을 산업과장으로, 위원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농산과장을 “삭제” 의결정족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논산군사무의 위임 위탁 조례중 새마을을 사회진흥으로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한다. ○ 폐지 ○ 대건 중·고등학교가 논산읍 등화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폐지 결정하고 소로 2-56호를 8~12m로 변경 ○ 제7조(수당) 중 월 100,000원을 월 150,000원으로 한다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논산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명예읍장 조례폐지 조례안 ○ 논산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 ○ 논산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에 관한 건 ○ 논산군 농외소득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논산군 법정리 198개리 → 199개리 논산군 행정리 471개리 → 485개리 ○ 반의 명칭과 구역중 편의란을 행정란으로 하며 법정 198개리 편의 440개리에서 → 199개리 행정 485개리로 변경 ○ 제2조 청인과 특수공인조항을 신설 제5조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순화된 행정용어 사용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폐지 ○ 폐지 ○ 폐지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승인 ○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제2조)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 하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중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로 보철용 승용차와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대부료의 납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개최일정을 11~12월

□ 제27회 정기회

- 회 기 : 1993. 11. 25 ~ 12. 24(30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4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3. 11. 25 ~ 12. 24. (3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제외) ○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김오중 의원 외 6인) ○ 군정업무 보고의 건 (김오중 의원 외 6인) ○ 논산군수 출석 요구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11. 25 ~ 12. 24(30일간) ○ 위원장 : 이태세 의원 간 사 : 윤종근 의원 위 원 : 강중선 의원, 우오중 의원 김영운 의원, 강대혁 의원 김종일 의원, 이태세 의원 김오중 의원 ○ 감사기간 : 12. 7~12. 9(3일간) ○ 구성 위원장 : 김성중 의원 간 사 : 엄경윤 의원 위 원 : 송상현 의원, 서평석 의원 강두식 의원, 윤석주 의원 박해영 의원 ○ 기간 : 11. 26~11. 30(4일간) • 전병용 논산군수의 군정설명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 11. 29~11.30(2일간)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초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허용에 대한 반대건의요구의 건 (강대혁 의원 외 13인) ○ 쌀수입개방에 관한 반대건의안 (김오중 의원 외 9인) ○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의 건 ○ 9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 논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액 : 82,433,477천원 ○ 증감액 : 1,592,138천원 ○ 확정액 : 84,025,615천원 ○ 건의문(별첨) ○ 건의문 (별첨) ○ 계획서 채택 ○ 요구액 : △ 4,764,526천원 ○ 삭감액 : △ 4,764,526천원 ○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 유사한 사항을 통·폐합하여 논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제증명등 수수료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에 계도 감면혜택 ○ 수입증지 소인대신 인증기 사용으로 민원발급시간 단축, 신속처리 ○ 공유임야 특별회계 폐지와 그에 따른 공유임야 관리업무 추진체계 정비하여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효율체계 정비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 93년도 농지세 재해감면 결정의 건 ○ 논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공중보건 의사 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논산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 논산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계룡출장소 관내의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임야 1,289㎡ 매입 ○ 연무읍 청사를 철거후 신축 ○ 재해입은 농지의 농지세 감면, 예상액 758,430원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사항을 논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공중보건 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지급으로 진료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근무자 : 월 10만원 • 보건지소 근무자 : 월 20만원 ○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요보호 부녀자의 계몽지도와 직업보호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담당 ○ 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의 조례를 단일조례로 제정 ○ 계룡출장소 관내에 납골당인 정명각 1개소 더두고 세부적 운영관리 규정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 논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 논산군 도로점용료 정수조례 개정조례안 ○ 논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무읍 정기시장 부지내의 사유지 109㎡ 취득하고 논산읍 화지리 16, 877㎡를 처분 주민불편사항 해소 ○ 군 경계지역의 양분된 농경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 (상월면 월오리를 종래 월오리 일원) ○ 상월면 월오리 종래 월오리 일원을 월오리 287의1부터 287의16, 288의1부터 288의5번지까지의 지역은 제외한다. ○ 논산군 분뇨처리장을 논산군 위생환경사업소로 승격하여 위생환경 철저히 하고자 함. ○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시 증가율에 따라 조정산식에 의해 산출 ○ 지속적으로 투자와 시설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기초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선거 정당공천 허용에 대한 반대 건의문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일동은 통합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에서 기초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 허용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와는 상반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대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기초의회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그 지역 사회 및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참 지방자치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 것이나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의 허용은 비민주적인 중앙집권적 속성과 기초의회 의원을 시녀화로 전락시키고저 하는 저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구태의연한 반 개혁적 제도일 뿐 아니라 부작용 또한 지역총화와 지역발전에 커다란 분열과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우리 논산군 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 허용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이를 백지화할 것을 건의한다.

1993년 11월 29일

논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쌀수입 개방에 관한 반대 건의문

1. 우리는 흙에서 태어난 자손으로서 「농자천하지 대본」의 지속과 보존을 위하여 쌀수입 개방 결의를 결사 반대한다.

1. 우리는 농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쌀수입 개방을 끝까지 반대한다.

1. 우리는 낙후된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쌀수입개방을 적극 반대한다.

1. 우리는 만일 쌀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은 살농정책으로 우리 농민과 더불어 생존을 위협한 극한 투쟁을 불사한다.

논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제28회 임시회

- 회 기 : 1994. 1. 31 ~ 2. 4(5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2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6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1. 31 ~ 2. 4 (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군정업무보고의 건 ○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결의안 ○ 군정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 ○ 계룡출장소 94 주요업무 계획설명 ○ 논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 ○ 논산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1. 31 ~ 2. 4(5일간) ○ 청취하도록 함 ○ 지역구별 의원별 보고(2월~3월중) ○ 기획실 외 16개 실·과·소장 ○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설명 ○ 논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를 논산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명칭변경하고 수당지급은 시체화장업무등 150,000원, 분뇨처리업무 100,000원, 하수폐수 등 업무 50,000원 지급 ○ 93. 12. 31까지의 기간을 94. 12. 31로 변경 ○ 위원회 구성 : 2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원 장 : 군수 • 부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군수가 위촉

□ 제29회 임시회

- 회 기 : 1994. 3. 8 ~ 3. 9(2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제2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3. 8 ~ 3. 9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논산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소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논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 ○ 논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3. 8 ~ 3.9(2일간) ○ 총무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와 신설된 위생환경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 소형자동차세에 대한 일시적인 인상 해소 ○ 연무읍 신청사 부지내의 사유토지를 기부채납 취득 ○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민·관·산 하협의체 구성 ○ 근무지내 출장 4시간 이상 10,000원, 4시간 미만 5,000원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p>○ 논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p>	<p>○ 총무위원회</p> <p>송상현 의원, 강중선 의원, 서평석 의원, 엄경윤 의원, 윤석주 의원, 강대혁 의원, 김종일 의원, 이태세 의원, 장화수 의원</p> <p>○ 산업건설위원회</p> <p>윤종근 의원, 우오중 의원, 김영운 의원, 박해영 의원, 김성중 의원, 강두식 의원, 김오중 의원</p> <p>○ 운영위원회</p> <p>강두식 의원, 송상현 의원, 서평석 의원, 윤종근 의원, 김성중 의원, 김종일 의원, 엄경윤 의원.</p> <p>○ 총무위원회 위원장 : 송상현 의원</p> <p>○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윤종근의원</p> <p>○ 운영위원회 위원장 : 강두식 의원</p>

□ 제30회 임시회

- 회 기 : 1994. 4. 7 ~ 4. 8(2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논산군명칭변경건의문 채택의 건 등 4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4. 7 ~ 4. 8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회 논산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94년도 의정활동보고회 연장의 건(장두식의원외 6인) ○ 논산군명칭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 (서평석 의원 외 6인) ○ 행정구역 편입 건의문 채택의 건 (장화수 의원 외 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4. 7 ~ 4. 8(2일간) ○ 강대혁 의원, 김종일 의원 ○ 2월 ~ 3월 → 2월 ~ 5월로 연장 ○ “논산군”을 도시·농촌 통합형태의 시인 “논산시”로 명칭변경하는 건의문 채택 ○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을 논산군 강경읍으로 편입요구하는 건의문 채택

□ 제31회 임시회

- 회 기 : 1994. 6. 1 ~ 6. 7(7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 ① 군정보고청취의 건 등 5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6. 1 ~ 6. 7 (7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군정보고 청취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논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주차장 조례개정 조례안 ○ 논산군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6. 1 ~ 6. 7(7일간) ○ 공병선 군수 군정 보고 ○ 강두식 의원, 이태세 의원 ○ 동조례 제24조내의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변경 ○ 주민세 징수방법 일부변경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300㎡당 1대 → 150㎡당 1대 - 공동주택 : 150㎡당 1대 → 100㎡당 1대 등 전면개정 ○ 논산군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기금 설치

□ 제32회 임시회

- 회 기 : 1994. 7. 19 ~ 7. 20(2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논산군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6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7. 19 ~ 7. 20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논산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 논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장화수 의원외 9인) ○ 논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김종일 의원 외 11인) ○ 논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엄경윤 의원 외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7. 19 ~ 7. 20(2일간) ○ 김오중 의원, 장화수 의원 ○ 보류 ○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 자율화 등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 ○ 위원수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검사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정 ○ 논산군 직제변경에 따라 총무위원회 실과중 “민원봉사실”를 삭제하고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변경 정비 ○ 의원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등 개정

□ 제33회 임시회

- 회 기 : 1994. 8. 30 ~ 9. 13(15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6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8. 30 ~ 9. 13 (1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군정보고의 건 ○ 논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제외) ○ '93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상수원등 현지답사의 건 (박해영 의원 외 1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8. 30 ~ 9. 13(15일간) ○ 공병선 군수 군정보고에 이어 각 실·과·소장이 보고 ○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논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채택 ○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예비심사기로 가결 ○ 강두식 의원, 엄경윤 의원, 윤종근 의원, 박해영 의원, 강중선 의원, 우오중 의원, 송상현 의원으로 구성 ○ 대표위원에 강대혁 의원, 위원에 이승배 농협중앙회 신도안 지점장과 김종선 논산축협 전무로 선임 ○ 상수원등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사대상지역 : 왕암저수지, 연산면 상수도 취수장, 두마 하수종말처리장, 광석 양돈단지, 성동 분뇨처리장, 두마 상수도 가압장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서명의원 ○ 논산군 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논산군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고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 논산군 취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논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행정구역 편입건의문 채택의 건 (강두식 의원 외 8인) ○ 상수원등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박해영 의원 외 15인) ○ 논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상현 의원, 우오중 의원 ○ 논산군내 강경읍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른 운영조례 제정 ○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 개정 ○ 농촌지원대책으로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부담요율 완화 ○ 폐지 ○ 의원이 직무로 인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시 :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보상 -장애시 :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보상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을 논산군에 편입 시키자는 건의문 채택 ○ 답사반 답사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을 논산군수에 통보 처리토록하고 그 종합대책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안 채택 ○ 1읍 2면에서 8개리를 분리하는 조례안 채택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군민대상 조례등 개정조례안 ○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 의 건 ○ 논산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 례안 ○ 논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 논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 정조례안 ○ 논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 리에 관한 조례안 ○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 ○ 행정구역편입 촉진을 위한 특별위 원회 구성 결의안 (강중선 의원 외 5인) ○ 하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 의안(강두식 의원 외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 한 조례안 제정 부수사항으로 채택 ○ 논산군민대상을 3개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확대하고 매년 시상하던 것을 격년제로 개정. ○ 경찰청으로부터 논산파출소 청사부 지등 3,971㎡에 대한 무상사용요구 에 대한 동의건 채택 ○ 상수도 시설분담금과 업종별 요금표 중 두마면 적용분을 신설 등 개정 ○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에서 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 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징수하는 안 채택 ○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 행절차 및 수수료율 등을 규정토록 개정 ○ 정화조의 청소수수료 조정과 과태료 의 부과징수 절차등 규정안 채택 ○ 요구액 : 10,733,799천원 삭감액 : 69,837천원 조정액 : 10,663,962천원 ○ 행정구역 편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 하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의 안 채택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개최)

□ 제34회 임시회

- 회 기 : 1994. 9. 30 ~ 10. 5(6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 ① 벼직과재배 시범포 답사의 건 등 5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9. 30 ~ 10. 5 (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벼직과재배 시범포 답사의 건 (김오중 의원 외 7인) ○ 회의록 서명의원 ○ 논산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강두식 의원 외 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결정 94. 9. 30 ~ 10. 5(6일간) ○ 벼직과 재배시범포 지역을 현지답사하여 벼직과 작황을 확인한 후 농가보급과 기술지도에 반영키로 원안 채택 ○ 엄경운 의원, 박해영 의원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위원회 운영조례안 채택 ○ 강경 보건지소 건물 및 토지와 신축 예정지인 사유지와 교환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 가결 ○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하는 등 개정

□ 제35회 임시회

- 회 기 : 1994. 11. 10 ~ 11. 15(6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등 4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11. 10 ~ 11. 15 (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계룡도시계획사업 및 계획구역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94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11. 10 ~ 11. 15(6일간) ○ 윤석주 의원, 윤종근 의원 ○ 상월면사무소 부지 확장을 위하여 인접토지 76㎡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 승인 ○ 두마 엄사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계획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가책정하는 안 청취 가결 ○ 추곡수매가는 작년대비 10% 인상 수매량은 최소한 1,200만섬을 수매하여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 채택

□ 제36회 정기회

- 회 기 : 1994. 11. 25 ~ 12. 29(35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0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11. 25 ~ 12. 29 (3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회논산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송상현 의원 외 8인) ○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군정업무 보고의 건 ○ 군수출석 요구의 건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11. 25 ~ 12. 29(35일간) ○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12월 15일까지 예산심사키로 가결 ○ 송상현 의원, 강중선 의원, 서평석 의원, 염경윤 의원, 윤종근 의원, 박해영 의원, 김성중 의원, 강두식 의원, 김오중 의원으로 구성 ○ 송상현 의원, 윤석주 의원, 김영운 의원, 강대혁 의원, 김종일 의원, 강두식 의원, 이태세 의원, 장화수 의원, 우오중 의원 으로 구성 ○ 94. 11. 28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군정업무 청취키로 가결 ○ 94. 11. 28 ~ 11. 29(2일간) 군수 출석 군정질의 답변키로 가결 ○ 94. 12. 2 ~ 12. 8(7일간) 18개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획안 채택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서명의원 ○ 군정업무 보고 ○ 군정에 관한 질문 ○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백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 논산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 강경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해영 의원, 김영운 의원 ○ 실·과·소·읍면순에 의하여 보고 ○ 군정보고에 따른 질문 및 답변 ○ 해당 상임위원회로 이송 12월 15일 까지 예비심사하도록 의결 ○ 해당 상임위원회로 이송 12월 15일 까지 예비심사하도록 의결 ○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운영부적정 등 10건 ○ 수범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수입 증대 등 2건 의결 ○ 백제권 행정협의회에 논산군이 가입하는 동의안 가결 ○ 혐오시설 근무 공무원의 장려수당을 5만원~8만원까지 인상하는 안 가결 ○ 조경공사비 예치금 완화등 행정규제 완화 내용의 조례안 가결 ○ 강경읍 대흥리 일대에 32,000㎡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정비안 가결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무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정취의 건 ○ 논산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논산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오중 의원의 제안으로 중공업지역의 확보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키로 가결 ○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 가결 ○ 각종 사회단체 보조예산운영의 부적정등 지적과 지역개발사업 및 예비비 집행시 의회와 사전 협의등 건의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채택 ○ 총 예산 953억 7,892만 4천원을 원안대로 가결 ○ 요구액 98,495,099천원 삭감액 850,955천원 조정액 97,644,144천원 ○ 논산군 보건지소의 명칭정정등 개정안 가결 ○ 농어촌등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개정안 가결 ○ 불용품 처분시 종전 장부상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에 대하여 감정평가하던 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개정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군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 례 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세 감면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 논산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용 자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 논산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 리 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회관 대강당 사용료를 종전 3만 원~6만 5천원 징수하던 것을 4만 원~9만원 징수토록 하는 등 개정 ○ 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등 논산군세 감면조례안 가결 ○ 연무읍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등 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가결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을 500만원 하던 것을 1천만원으로 개정 ○ 하수도 사용료 효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개정 ○ 사업기간을 89. 7. 1 ~ 94. 12. 31까지를 89. 7. 1 ~ 96. 12. 31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등 개정

□ 제37회 임시회

- 회 기 : 1995. 2. 13 ~ 2. 22(10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 ①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등 6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5. 2. 13 ~ 2. 22. (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95군정방향 설명의 건 ○ '95 군정업무보고의 건 ○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 논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결의안 (강두식 의원 외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2. 13 ~ 2. 22(10일간) ○ 김두희 논산군수 '95 군정방향 설명 ○ 실·과·소별 '95 군정업무 보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의안 가결 ○ 논산군 실·과 설치등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는 안 가결 ○ '95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회를 2월 23일부터 5월 27일 개최하는 결의안 가결

□ 제38회 임시회

- 회 기 : 1995. 4. 8 ~ 4. 20(13일간)
- 출석의원 : 17명
- 부의안건

① 영농준비현장 등 현지답사의 건 등 11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p>95. 4. 8 ~ 4. 20 (13일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8회 논산군 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 영농준비현장 등 현지답사의 건 (윤종근 의원 외 7인) ○ 논산군의회 의장단 연임의 건 ○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4. 8 ~ 4. 20(13일간) ○ 2개반으로 구성 영농현장등 답사키로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사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정개발 현장(농업용수용, 간이 급수용) • 영농현장(포도, 자두농장 및 무기둥하우스) • 논산상수원(논산읍) • 산불예방 현장(별곡 수락) • 위생환경사업소(성동 개척) • 두마지역 개발현장 ○ '95. 4. 4부터 제2대 의회 개원시까지 잔여임기간 의장단 연임키로 가결 ○ 군 재무과에 평가계를 폐지하고 부과계와 징수계를 신설하는 등 개정조례안 가결

원 인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논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 조례안 ○ 논산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영농준비 현장 등 답사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의 정원을 폐지하고 장학생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는 등 개정안 가결 ○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및 지도감독 업무의 읍면위임 등 개정조례안 가결 ○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하는 등 개정조례안 가결 ○ 논산군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2퍼센트로 하는 등의 조례안 가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완화 등 개정조례안 가결 ○ 쓰레기 봉투 제작시 광고계제로 군세수증대 방안등 개정조례안 가결 ○ 논산 상수원 집수정 주변의 부유물질 정리 및 탐정저수지에서 취수원까지의 하상정리등 현지답사결과 의견을 논산군수에 통보 처리케 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안 가결

□ 제39회 임시회

- 회 기 : 1995. 5. 30 ~ 5. 31(2일간)
- 출석의원 : 16명
- 부의안건

①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

월 일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94. 5. 30 ~ 5. 31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논산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계룡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5. 30 ~ 5. 31(2일간) ○ 이태세 의원, 김오중 의원 ○ 소방차 운전원 정원을 도에 이관하는 등 개정조례안 가결 ○ 논산군청 소재지의 지번이 내동택지 개발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거 내동리 404번지에서 내동리 824번지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 가결 ○ 계룡 도시계획상 공원지역 일부를 수도 및 도로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청취하고 논산군의회 의견으로 연산면 지역까지 계룡상수도 관로연결토록 의견을 계룡출장소에 통보키로 함.

행 정 사 무 감 사

□ 감사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제1항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 기 간 : 제 7 회 (91. 12. 16 ~ 12. 18)정기회
제 16회 (92. 12. 21 ~ 12. 23)정기회
제 27회 (93. 12. 7 ~ 12. 9)정기회
제 36회 (94. 12. 2. ~ 12. 8)정기회
- 목 적 :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잘못 집행된 분야 시정요구
- 대상기관 : 논산군 실·과·사업소, 읍·면사무소
- 감 사 반 : ┌ 감사위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사무보조 : 전문위원, 보조직원, 속기사
- 감사장소 : 논산군청 제1회의실

□ 91년도 감사결과

- 총 괄

구 분	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비 고
계	30	30	
시정 및 처리요구	22	22	
건의 사항	8	8	

○ 시정 및 군수 처리요구 사항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기 획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회단체의 재정지원은 대상근거를 분명히 하고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문 화 공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있는 충효교실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사후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놀이소식지등 군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람 	
내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형식적인 운동에서 조속한 시일내 에 정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동으로 전환되도록 대책을 강 구하기 바람. ○ 양촌면 청소년수련원 발생사고건에 대하여는 새마을과와 협의 후속조치하기 바람. ○ 생활민원(가로등 및 하수구 뚜껑파손, 기타) 발생즉시 효과적인 대처방안 강구 및 조치하기 바람. 	
새 마 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등 새마을사업 시행시 특정업자 도급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계약체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연무읍 안심도로 확장 사업이 5년간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은 관련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92년내 완공되도록 조속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주차장의 부실공사로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조치하기 바람. ○ 각종 사업의 계약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바람.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사 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정양원 수용환자의 복지향상 도모 및 자해, 타해할 위험물 제거와 정신질환자의 탈출방지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고 노후된 숙소, 식당, 목욕시설, 화장실등 대책을 조속 조치하기 바람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묘지의 불법개간 및 무단점유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폐수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 	
산 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 영농단 사후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탐정저수지내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어획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읍 도심지내에 불법주정차로 교통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견인차 동원 등으로 강력단속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바람. ○ 하상주차장 등 이용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기타 주차장에 대하여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기 바람. ○ 대성실업에서의 목적외 사업으로 잡석이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 가정용 가스판매 구역제로 인하여 판매업자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강구 조치하기 바람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산 립 과	○ 조림지 하에작업의 부실한 실정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건 설 과	○ 하천감시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 시 과	○ 코리아나호텔 오폐수처리에 군비를 투자 시설하고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인가를 규명하고 오폐수로를 이전토록 조치하기 바람.	

○ 건의사항

- 백제권 개발사업에 본군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서울신문 마을보급을 축소하기 바람.
- 놀외소식지와 내고장 소식지를 한데 묶어 월 1회로 통합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연산 백중놀이 지원금의 항목이 다양한 바 예산 통합 편성토록 하기 바람.
- 무공해 공장이 관내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80. 5. 22일자 지정된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하여 적극 개발되도록 도에 건의 조치하기 바람.
-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포장사업시 이용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양성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 92년도 감사결과

○ 총 괄

구	분	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비고
	계	42	42	
	시정 및 처리요구	31	31	
	건의 사항	11	11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기 획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회단체의 재정지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감독 ○ POOL 예산의 합당한 집행 	
문화공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사정비사업은 주변경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문화재는 원형이 보존되도록 대책을 강구 ○ 군회보 및 각종 홍보물이 전달과정에서 사장되는 사례가 있는 바 홍보의 본래목적과 투자재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 	
내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과 읍면의 인사교류시 읍면직원의 근무기간, 업무에 대한 숙련도, 자질 등 인적자원의 실정을 감안하기 바람. 	
사회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설운동장 부지 미매입분 토지에 대한 조속한 매입조치 ○ 연무 안심도로 확장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함과 아울러 사업부진에 대한 사유를 규명하고 관계공무원 전원엄중문책. ○ 강경읍 채운리(방죽안) 안길포장공사의 포장물강도를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주차장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임. 이후 하자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하자보수 관계담당공무원과 하상주차장 관리책임자를 엄중문책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강제징수) 강구 	
사 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단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강구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의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장의물품 폭리근절대책 강구 ○ 공동묘지의 불법경작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에 철저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구역내 상가지역의 분뇨무단방류에 대한 대책강구 ○ 논산읍 쓰레기매립장을 현대적인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시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환경오염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강구 	
산 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이 만료된 가두리양식장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 ○ 소규모 축산업자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지원대책을 강구 ○ 사고 농어민후계자의 조속한 처리 촉구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주차장 이용증대방안 강구 	
산 립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도의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 강구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건 설 과	○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미해결 토지에 대한 조치 강구	
도 시 과	○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행정에 주력하기 바람 ○ 하수도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강경하수도 공사는 골조 마무리 및 주변정리가 미흡하며, 연무하수도 공사는 부실공사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 후 재시공한 부분도 있으나 현재 몇 부분이 노면과 구조물 사이의 급경사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재시공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엄중문책	
보 건 소	○ 보건지소장, 치과의사, 읍면 보건요원의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 방역소독약품은 읍면 수요별로 객관성 있게 배정조치	
농 촌 지 도 소	○ 농민후계자 사후관리 및 지도에 철저	
공 통	○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하여 군비를 투입 보수하는 사례가 있으니 하자보증기간내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 ○ 계약사무담당공무원의 사무처리능력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각종 사업을 회계년도 독립된 원칙을 바탕으로 가급적 차기년도 이월을 지양하기 바람. ○ 의회의 요구된 자료제출은 성실·정확·신속을 기하기 바람	

○ 건의사항

- 군정에 관한 분기별 심사분석결과를 의회에 보고요망
-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사업의 선정시 의회와 사전협의 요망
-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분리수거용기와 주거지내 롤온카를 증설함이 바람직할 것임
- 농작물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조치하기 바람
- 탈루세원의 방지와 경영수익사업의 과감한 전개로 지방재정신장의 특단대책을 강구 요망
-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군청사주변의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
- 문화재보존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계부처에 건의요구하여 확보하기 바람
- 백제권개발사업에 본군이 포함되도록 계속 노력하기 바람
- 노상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호차원으로 상수도와 오물수거의 경비는 수혜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임
- 지역개발 수요의 팽배로 군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홍보함과 병행해서 지방세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언론매체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납세의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93년도 감사결과

○ 총 괄

구 분	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비 고
계	25	25	
시정 및 처리요구	18	18	
건의 사항	7	7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문화공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문화원에서 발간한 「논산지역의 교육사」 책자의 부실한 내용 시정 ○ 놀이향토제 행사종목 중 대중화되지 못한 경기종목 조정 	
사회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아채취기를 활용하여 93년도 도로포장 시행사업 중 본청소관 실과별 3개소 읍면당 3개소씩 선정 채취하여 94년 3월까지 분석 제출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 ○ 지방세 결손처분의 신중한 처리대책 강구 ○ 보도블록 교체공사의 하자보수공사 실시 	
사 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 요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대책 강구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묘지 표주석의 철저한 관리대책 강구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폐수 배출업자의 철저한 교육 및 단속 ○ 성동 분뇨처리장의 악취제거 대책 강구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산 업 과	○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상태 정확히 파악 ○ 탐정저수지 불법어로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산 립 과	○ 도시계획구역내 소재, 공유임야의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	
건 설 과	○ 군도포장공사의 조속한 완공대책 강구	
도 시 과	○ 도시 보도블록공사의 하자발생시 치유대책 강구 ○ 무허가 건물 예방대책 강구	
농 촌 지 도 소	○ UR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수립	
읍 면	○ 읍면시행 각종사업의 부실공사 사전예방 대책 강구	

○ 건의사항

- 지역개발사업 선정시 의회와 사전 협의 요망
- 남자 양로원 설립방안을 강구
- 탐정저수지 유료낚시터 활용방안 강구
- 공유임야를 현실에 맞게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자 등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대부 및 불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군도포장시 선보상 후공사 시행방안 강구
- 논산군의 상징나무인 느티나무를 군청사내에 식재방안 강구
-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전 읍면으로 확대방안 강구

□ 94년도 감사결과

○ 총 괄

구	분	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비 고
	계	34	34	
	시정 및 처리요구	24	24	
	건의 사항	10	10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기 획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청 특수시책 추진에 있어 특정인에 대하여만 계속적인 예산 지원 사례가 있는 바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신규 우수사례가 발굴되었을 때에는 심층분석 군정홍보하기 바람. ○ 피소사건 중 패소가 확실히 인정되는 소송사건은 소송진행을 중단하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문화공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보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중 불합리한 홍보게시판 및 부적합한 수용비((예) 1매짜리 달력 등) 집행으로 예산 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개선 	
내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안내제, 전화민원 처리 등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와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는 하나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더욱 친절한 민원처리 대책을 강구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사회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사업당시 회사 또는 기부 채납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부당 이득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 미완료 토지에 대하여 조속 이전조치 ○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정산에 철저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11. 29 업무보고시 지적한 연무읍 청사 신축공사의 준공 신고서 사본, 관련 공문 사본, 감독공무원 확인서, 현장소장 각서, 주민의견서, 민원인 의견 청취결과 보고서 재무과장 각서, 기초현황 사진 등을 서면제출 	
지 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민원은 일밭 타 민원보다 민원인의 불평의 사례가 많으니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 	
사 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시에만 그치고 사후확인 점검이 소홀한 바 지적사항에 대한 재점검 확인 및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묘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서면제출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대상미만 영세축산농가(6,532농가)에서 방류되는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예산지원 등)을 강구 	
산 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 영농단의 점검 및 운영실태 분석이 미흡하니 정확히 조사하여 서면제출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산 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 영농후계자를 처저히 조사하여 용자금 회수대책을 강구 ○ 1농가가 농기계 반값지원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조치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읍의 출·퇴근시간에는 대중교통의 대혼잡을 이루고 있으니 교통질서의 확립대책을 강구 	
산 립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종갱신이 요구되고 있는 조림사업은 년차적인 대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경제림 조성방안을 강구 	
건 설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과 소관 각종 공사에 대한 감리일지 사본을 서면제출 ○ 농촌 정주권 사업인 부적면 부항 1리, 신교 1리, 탑정 1리 새마을 신축공사의 하자(2층 바깥 방수조치 부실 등)와 부항리 상수도 시설의 하자(배수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조속 보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 	
도 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중 부적격자((예)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재확인 및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제출 	
민 방 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적출물에 대한 처리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바 처리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지도 단속에 철저히 기하도록 조치 	

소 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농촌지도소	○ 영농단, 위탁영농단에 대한 경영평가분석 결과를 서면제출	
각 읍 면	○ 읍면 공히 체납세금 독려실적이 미흡하니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특별조치 ○ 가로등 관리에 있어 지정된 관리인이 점소등을 잘 하도록 하고 여름철에 벌레가 들어간 가로등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완료 강구	

○ 건의사항

- 지역개발사업 선정 및 예비비 집행시 의회와 협의요망(기획실)
- 놀이향토제 행사시 계백장군모제 주관을 향토연구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 전담 부서를 선정하거나 기존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등으로 이관 검토(문화공보실)
- 군 체육회와 군 생활체육연합회의 통합방안 강구(사회진흥과)
- 이동식 쓰레기통이 밀집 배치된 곳의 물온박스는 오지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환경보호과)
- 국도나 지방도 등 복잡한 버스승강장에 포켓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방안 강구(지역경제과)
- 자정이 지난 후 구급차의 소음예방 대책 검토(보건소)
- 농기계 수리회수를 증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농촌지도소)
- 읍면 농촌상담소 업무보조원 확보방안 검토(농촌지도소)
-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용 용기개발 방안 모색(농촌지도소)
- 노인 여가시설 확대 추진방안 검토(농촌지도소)

군 정 질 문 및 답 변

○ 92년도

질문일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p>92. 10. 20 (화) 제 1 3 회 임 시 회</p>	<p>○ 10월 17일 우박피해 현황과 대책은?</p> <p>○ 군수산하 공무원의 사기양양대책과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의 과감한 조치의향은?</p>	<p>○ 지난 17일 우박피해로 농작물 1,731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농가는 3,088호로 잠정 집계되었으며,</p> <p>○ 읍·면 전직원을 17~19일까지 비상근무토록 지시하여 17일 1단계 긴급조사하고 18일부터 23일까지 필지별 정밀조사와 피해농가 생활실태 조사 완료.</p> <p>○ 49개 조사반을 리장, 새마을지도자, 독농가로 편성해 피해농가 입회하여 조사지시 하였으며 관내 기관, 단체의 우박피해 농가에 노력지원 협조요청과 군수산하 전직원으로 하여금 피해농가 사과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음</p> <p>○ 공무원 생일에 군수 축하전보와 선물 증정하고 별곡 소재 삼동원에서 공무원과의 격의 없는 연찬회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실시, 실·과·소·읍면별로 공무원 체력단련 행사 실시, 공무원</p>

질문일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p>○ 민의수렴 방법과 그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민의 수렴 방법은?</p> <p>○ 다수의 사업추진중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 것은 얼마나 되며 행정위주, 관주도의 행정수행자세를 개혁할 용의는?</p>	<p>자녀 학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주택마련자금 융자 또한 공무원 산업시찰과 모범공무원을 엄선하여 해외연수 구상을 하고 있으며,</p> <p>○ 군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2명 등 23명을 공직기강감사를 통해 문책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회, 보신, 무사안일 등의 자세와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사전활동을 전개하겠음.</p> <p>○ 일정한 틀보다는 항시 귀를 활짝 열어 놓고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겠음.</p> <p>○ 91년도에 농어촌 진흥공사의 현지 조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를 작성 작년 12월 6일 논산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에 지정승인 요청한 바 있음</p> <p>○ 법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 또는 행정구역 경계변경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 처리하여 왔으</p>

질문일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p>○ 의원들이 지적 시정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적 사고방식이며 일반인, 특정인에 대한 사업시행전 누설방지에 철저를 기할 생각은?</p> <p>○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교부세 지방양여금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은?</p>	<p>나 포괄사업비의 집행등 기왕 예산에 편성된 사업집행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성실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음.</p> <p>○ 시대의 변천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형태를 바꾸고 고정관념을 깨는 행정을 펼쳐 주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겠음.</p> <p>○ 지적하신 것중에서 처리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명쾌하게 파악해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군의 장기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지역개발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교육으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p> <p>○ 금년도 일반교부세 지원액은 198억 800만원으로 작년 당초지원금 142억 900만원보다 30%가 신장되는 55억 7,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 교부세는 남부순환도로 5억, 체육고 진입로 4억원, 논산 외곽도로 3억원을 받게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35억 8,8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더욱</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금년 9개월의 군정수행에 대한 하자는 없으며 남은 3개월의 마무리 목표와 당면사항등에 하자는 없는지?</p> <p>○ 충남 체육고등학교 건립부지에 대한 처리방안과 논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진행은?</p> <p>○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취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진행사항은?</p>	<p>많은 자금을 양여받는데 노력을 하겠음</p> <p>○ 92년 군정수행은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봉사·책임·신뢰·창의행정을 주력, 활기찬 논산시대 행정을 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끌고루 혜택이 가도록 주민편에서 군정을 펼쳐 나가겠음.</p> <p>○ 체육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92년 1회 추경에 5억5천만원, 우가 교부세로 4억원 지원받아 합계 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설계가 완료되어 10월 17일 기공품의와 입찰계약 체결 되었으며,</p> <p>○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 년차계속사업으로 79,580㎡중 80,119㎡는 매수완료하고 5필지 9,461㎡는 불응 지속적인 독려로 매수하겠음.</p> <p>○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48,479㎡로 소방도로 개설 포장외 15건의 도시기반 확충사업비 10억 7천만원을 확보 10월 현재 개선계획 수립용역설계 중에 있으</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균유임야 공장부지 조성사업은?</p> <p>○ 관외거주 직원 현황과 대책은?</p>	<p>며 93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 취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89년 7월 1일 사업인가를 득한 후 8월 11일 2차공사를 완료하여 오늘 제3차 공사분 수의계약 체결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8%이며 일반체비지 22필지 6,532.5㎡를 공개경쟁입찰후 낙찰자가 없을시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하며 매각이 부진한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로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p> <p>○ 논산군 상월면 대촌리 산67의 8필지 3만 4여평의 균유임야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지난 2월 부군수 외 9명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유지 6천 4백평의 부지매입비 3억 2천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부동산 및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등의 여건으로 공장용지 분양이 어려우며 인근 주민 34세대의 강력반대도 있어 주민저항이 거셀 경우 계획을 수정할 계획임.</p> <p>○ 군수산하 관외거주 직원 현황은 기능직 이상 공무원 892명 가운데 14.8%</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 수립시 집행부 임의대로 결정되는 일이 없는지, 읍면을 참여시켰는지 참여시켰다면 추진과정 또 의회 의견을 참고한 일은 없었는지?</p> <p>○ 군수산하 각 실·과의 업무추진 차질로 논산군 공설운동장 부지 편입지역에서 축산농가 정화조 시설자금을 책정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편입지를 초기 독촉하고 있으므로 환경과와 새마을과 간에 과도 현상이 없는지?</p> <p>○ 농업재해보상법을 정부가 제정하도록 적극 건의할 용의는?</p>	<p>132명으로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가능한한 관내에 거주하도록 권고해 나가는 노력과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에 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을 해나가겠음.</p> <p>○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의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음. 앞으로 신규사업 노선을 결정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는 물론 의회의 의견이 십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p> <p>○ 논산읍 취암리 20번지 소재 배기문씨가 운영하는 축사는 90년 4월 30일 정화조 시설 농가로 책정되었으나 7월 30일 논산군 공설운동장부지 편입의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하였음.</p> <p>실·과간 유관기관간 필요한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확보주의로 인한 선의의 주민피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p>○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부분적으</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상월면 대촌리 군유임야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수정조치할 용의는?</p> <p>○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있어서 사전 의회에 보고 없이 도에 먼저 보고한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의회를 시너처럼 생각하면서 사전결정하고 사후보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가?</p> <p>○ 논산시 승격을 위한 논산읍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군수 산하 공무원들이 논산을 이탈 떠나는 마당에 투자를 한다면 이율배반적인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군수께서 해결 방법은?</p>	<p>로 개정이 있었는데 농업재해보상법으로 되어야 피해액의 보상이 이루어질텐데 아직 보상관련 법규가 없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어업재해에 대한 보상법이 제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p> <p>○ 지역구이신 박해영의원과의 상의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고 군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처리하겠습니다.</p> <p>○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하고 민원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 의원님들에 소상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p> <p>○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을 긴밀히 하여 이 지역자원으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93년도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93. 11. 30 (화) 제 27 회 정 기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의 지시나 지침보다는 의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상부의 지시나 지침 때문에 책임회피하거나 또는 전가한 일은 없는지? ○ 문민정부가 수립된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당정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구시대적 행정관습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 연간 지시문서 접수건수와 또 보고건수는 몇건이며 공문서의 증가로 인한 인력의 낭비와 균정을 소홀히 한 일은 없으며 이의 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일은 있는지? ○ 내년도에는 유료세의 목적세 전환과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 예산을 지방비 부담등으로 인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될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중앙으로부터의 관습에서 벗어나고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때에만 우리는 가능한 것이며, 관내의 읍면단위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음. ○ 문민정부 출범 2000년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있어서 저와 산하직원 모두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맞는 새로운 공직자세를 확립해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임 ○ 금년도에 군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지시문서건수는 11월 29일 현재 11,774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부에 보고된 문서는 5,660건임. ○ 94년도에 우리 군의 유료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6억원 감소되고 경로우대승차권 지급비로 7억 9천만원이 지급되나,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기업운영방식의 도입문제? ○ 논산읍을 시로 승격대책으로 인구 유입대책과 인접면을 병합하여 시 인구 충족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논산군을 2개군으로 분군 방법은? ○ 군정방침인 맑은 행정과 참된 봉사에 대한 추진방안은? ○ 3읍 2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논산시 승격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따른 자원조달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판매세 15억 5천만원, 양여금 11억원으로 총당가능 ○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와 공기업 운영의 다각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의 방안으로 세수증대 노력하겠음. ○ 시승격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분군의 문제는 법률적인 사항이며, 현재 추진중인 내동, 강산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996년도에 논산읍의 인구가 57,000여 명으로 예상되어 시승격 인구에 충족될 것으로 사료됨. ○ 맑은 행정, 참된 봉사, 고른 개발, 빛나는 문화는 군정이 나갈 방향을 제시한 대목이며 군수 이하 8백여 공직자가 군정수행을 위해 가슴에 새겨야 할 좌표로 여기고 있음. ○ 도시계획 재정비와 논산시 승격에 필요한 자원확보 문제는 저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고민하여 풀어가야할 문제로 앞으로

질문일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p>○ 군의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교부세가 1인당 17만원 정도 감소되는데 이의 대책은?</p> <p>○ 관내의 신축건물에 대한 감리 단속, 규격자재 사용 여부, 강도 검사 등 설계에 맞게 시공되고 있으며 사후 관리대책은?</p> <p>○ 관내에 고부가가치가 높은 무공해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행정서비스의 향상방안은?</p>	<p>로도 재원확보에 있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음.</p> <p>○ 교부세 배정에 있어서 인구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2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 교부세를 산정합니다만 인구가 많아야 교부세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므로 군수 산하 전공무원이 내고장 주민등록갓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음.</p> <p>○ 관내 신축건물에 대한 감리단속은 5회에 138개 현장을 실시하였고, 건축사무소의 감리사항은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 현장 8개소에 대해 시정명령도 실시한 바 있음.</p> <p>규격자재, 강도검사 등도 공업진흥청의 검사품목 사용토록 사전검사와 정기적인 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p> <p>○ 금년 공장설립신고 접수된 26개 업체중 20개 업체가 무공해업체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부가가치가 높은 무공해업체 유치에 노</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의 숙원인 논산시 승격 준비 기획단의 설치용의는? ○ 행정구역상으로 논산군에 속하면서 행정상으로 충남계룡출장소인 두마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한 경비부담 여부는? 	<p>력을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를 맞아 기업의 서비스를 앞서 갈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시 승격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가시화할 필요가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추진하겠음. ○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지방세,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특정인을 위한 대가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주민에 이익을 받는 범위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이 있는데 금년에 두마면에서 받아들인 총 세입은 10억 9천 200만원이며, 신도시개발에 따른 경비부담은 도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음

○ 94년도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94. 11. 28 (월) 제 36 회 정 기 회</p>	<p>○ 행정개혁이나 업무개선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한다고 생각하는지? 불신·불안·부실의 3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군정의 기본방침과 시행방향을 설정 시행하고 계신데 그 결과와 성과는?</p>	<p>○ 총 481건의 쇄신과정을 접수하여 시행이 가능한 124건을 채택 민원동행안내 등 65건을 자체 추진하고 법령개정 등 상급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59건은 도에 건의 개선하였으며, ○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의 공무원은 삼성인력개발 등 민간기업에 위탁 실시하고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직장자체교육을 통해 의식개혁과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자세를 견지토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하고 있음 ○ 265마을과 생활현장을 통하여 7,322건의 현장행정처리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 생활개혁 분야에서 주민신고망 구축, 주민신고 고발창구 운영 등 생활개혁 추진체제를 구축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재해위험지구 시설 73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실시와 노후교량 개보수 11개소, 상설시장의 소화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 주차공간 확보등 각종 질서위반 행위 지도단속 등 4대 질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학교주변 위해환경 정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행정을 경영체제로 전환 생활 행정화, 국제화하고 수당, 상금, 특진 등 공정에 의한 행정의 개혁단행 용의는?</p>	<p>수돗물 공급에도 소홀함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p> <p>○ 농업의 국제경쟁력 갖는 시장 지향적 상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1군 1명품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음.</p> <p>○ 2000년대 논산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군정종합건설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p> <p>○ 내고장 사랑운동의 전개에는 가급적 민간차원에서 확산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p> <p>○ 산하 공무원에 소신을 갖고 책임행정을 추진하라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내일처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한 자세로 근무하는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p> <p>○ 경영행정 생활행정화, 국제화하기 위해 소양교육, 직장교육, 전문교육, 기본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우리군 주택소유와 공급현황 및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현황, 공사감독 내용, 소방상·하수도, 오폐수, 쓰레기, 고층아파트 주민의 건강관리 문제는?</p>	<p>○ 94년 상반기에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시 유공공무원 1명을 특진시킨 바 있고, 94년 하반기에도 8급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도에 추천한 바 있음.</p> <p>○ 우리군의 주택수요는 43,179가구이며, 주택수는 39,857가구로 보급율 92.3%로 94년 완공된 아파트는 1,256호 신축중인 아파트 2,348호가 완공이 되면 주택난은 해소되리라 생각함.</p> <p>○ 아파트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을 위해 자체점검 10회, 건설부에서 2회, 충남도에서 2회, 종합 14회를 점검하였으며 부실사항 없으며,</p> <p>○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법 규정에 의하여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상·하수도 및 오폐수 처리는 깨끗한 맑은물의 공급을 위해서 10,500톤 규모의 논산 상수시설을 95년까지 28,800톤 규모로 확장중에 있으며,</p>

질문일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근속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있어서 주민행정에 따른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연고지 고려 배치할 용의는? ○ 군정종합 쓰레기장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며 인근주민의 여론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오폐수 처리는 분류식 처리방법으로 시설관리할 계획이며, 쓰레기 처리는 분리처리 방법을 정착토록 행정지도와 단지별 소각 처리장을 설치 쓰레기량 감소와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 ○ 고층건물의 기류변화에 의한 주민의 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대처해 나가겠음. ○ 연고지 배치문제는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 가급적 연고지 근무토록 하여 사기진작과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대민봉사에 전념하도록 하겠음. ○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가 적지로 판단되어 93년 6월에 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후 타당성 조사 실시 결과 동 지역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94년 6월에 환경전문기술용역 업체로 현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매립장 주변 환경을 고려 새로운 기술공법 설치하여 완전 수질오염방지 시설화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장이나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사업비가 읍면의 여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에도 균일하게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닌지? ○ 앞으로 조림시에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수종으로 대대적인 개량을 할 계획은? ○ 무선전화기의 난청지역 해소문제에 대해 시정요구나 건의를 해본 일이 있는지? 	<p>하는 것이며 지역주민과 사전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별 시급 또는 화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은 재정투자가 주민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균일하게 배정하였음. ○ 앞으로 조림사업은 과거의 녹화 위주에서 경제림 위주로 식재하여 산림의 보전, 휴양, 수분함량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음. ○ 관내 3개읍·면이 난청지역으로 파악되어 상월면 일대는 금년 상반기 공주군 계룡면의 기지국 설치로 해소되었고, 연무읍 일부지역은 95년 상반기에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난청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며, 다만 별곡면의 고속도로변을 제외한 난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UR, WTO, 블루라운드, 그린라운드 등이 새로운 국제문제로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의 손실을 정부차원이 아니면 군에서라도 행정적, 경제적 구제방법과 신농정 추진에 따른 농촌지원시책을 시행하도록 건의 수정할 용의는?</p> <p>○ 관내 세차장, 카센타, 정비공장 현황과 그곳에서 발생하는 부동액, 폐유, 페타이어 등에 대한 처리대책은?</p>	<p>청지역은 지역특성상 산악지역으로 이동전화 중계기술 문제로 당분간 난청해소 기대는 어려운 실정임.</p> <p>○ 농어촌 발전계획을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5년간 걸쳐 저희 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2,914억원으로 농업인력 육성, 농촌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농업 기계화, 농업시설 현대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p> <p>○ 관내 폐유 등이 발생하는 업소는 86개소로 동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폐유및 폐부동액은 일정용기에 보관한 후에 폐유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그중 적정보관한 폐부동액의 일부는 군 또는 읍면에 신고하면 농기계 엔진부동액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94년 4월 12일에 갖췄으나 아직 실적은 없으며,</p> <p>○ 페타이어는 계룡출장소 관할소재</p>

질문일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p>○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불우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리단위 읍면 단위로 빈 집을 이용 집단수용 방안으로 구호계획은 없는지? 또한 부자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구호대책은?</p> <p>○ 논산시 승격문제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추진방향은?</p>	<p>해룡타이어에서 전량 수집한 후에 군부대 공사용 및 재생타이어 원료로 공급되고 있음.</p> <p>○ 저희군 무의탁 노인은 124명으로, 관내 공가는 37동이나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기거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있음.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보호하고 주거시설이 불량한 노인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등 이웃돕기 운동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p> <p>○ 관내 저소득 부자가정이 139세대로 이들 자녀의 양육비, 학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자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p> <p>○ 시승격 문제는 법으로 정해지는 사항으로 우리군과 같이 시승격의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시승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7만 논산군민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읍면의 민원부서 근무인원을 업무량에 맞게 적정배치할 계획은 없는지?</p> <p>○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관내 하천 들을 이용한 골재채취 사업을 병행해볼 용의는?</p>	<p>○ 민원실 근무인원의 조정필요시 읍면장이 적의 조정배치해 나가고 있으며, 읍면의 정원은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별 면적, 인구, 산업구조, 문화시설, 업무량을 감안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 적정 인원이 증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음.</p> <p>○ 내년도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입사업은 군청사 지하 종합상가 조성 임대사업과 하천골재채취 판매사업 두 가지로 군청사 지하 종합상가 조성 임대사업은 내년도에 우선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97년 이후부터는 투자비를 공제하고 연평균 3억원의 순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하천 골재채취 판매사업은 성동면 개척리 금강에서 30만m^3의 모래를 군직영사업으로 채취하기 위해서 설치를 이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9억 정도의 순수입,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촉사, 탐정저수지, 계백장군묘, 충곡서원 등을 경유하여 순환도로 개설과 벚꽃을 식재하여 군민 휴식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할 계획은 없는지? ○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 정확히 조사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용의는? ○ 우리군의 자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완전자립은 언제쯤이며 자립대책 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관촉사 주변 정리사업과 계백장군 묘소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탐정저수지, 계백장군묘소, 고정리 허씨정묘, 돈암서원 등으로 연계되는 관광문화권 개발을 수립해서 지역사회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본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전국 전산망을 통하여 재산소유여부를 조사하여 무재산, 행불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결손처분 조치토록 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겠음. ○ 우선 내년도 사업으로 하천골재채취 판매사업과 군청사 지하종합상가 조성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세수 확보와 경영수입증대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시책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일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p>○ 시승격 준비기획단의 활동사항을 만족하게 생각하는지 또한 산하 공무원의 논산군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 성과와 시승격의 전망과 대책은?</p> <p>○ 대통령께서는 승진인사에 있어서 능력위주로 발탁하라고 하셨는데 정실인사가 안되도록 능력위주로 발탁하여 인사할 수 있는 방안은?</p> <p>○ 논산군내 건설공사에 골재의 양은 금액으로 얼마며, 골재개발, 군유임야개발, 논산저수지 개발 등을 통해 군수입을 증대시킬</p>	<p>○ 그동안 시승격 추진기획단에서는 우리 논산군의 도·농 복합형 시승격 문제를 놓고 논산 시승격을 위한 정책건의, 유사한 군과의 연대활동,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논산 시승격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개념적립등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대내적으로 논산읍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 논산 도시재정비 계획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검토,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전개 등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추진해 왔으며, 또한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부득이한 직원을 제외한 49명 전원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긴 바 있음.</p> <p>○ 인사규정이 개정되기까지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서 객관성 있는 인사제도로 한치의 흠도 없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p> <p>○ 군 재정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성동면 개척리 금강천에서 30만㎡의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음.</p>

질문일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p>수 있는 방안은?</p> <p>○ 매년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었으며 95년 예산안도 효율적인 예산인지 자유총연맹등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은 부적합하며 내무행정비에 반공계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남북자유왕래를 추진하는 시점에 시대착오의 구태의연한 자세이며 장애인 작업장인 주식회사 장자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는 무엇인가?</p>	<p>며, 여건상 수익성도 좋고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군청사 지하종합상가 조성 임대사업은 95년도 실시를 목표로 사업의 타당성과 수지분석등을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코자 연구개발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놓고 있음.</p> <p>○ 매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우선 의무경비와 필수경비를 계상한 후에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인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례적 활동을 존중해서 94년도 기준에 따라서 보조사업명과 보조금액을 명시하여 편성토록 되었으며, 주식회사 장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차원에서 그동안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p>

질문일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공장허가, 도로개설 분야에 있어 공개행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군내 전지역의 식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군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 경로승차권 지급제도 중 현금 지급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공장설치,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신뢰구축에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상수도는 총 37 항목을 매월 2회 이상, 간이급수시설은 8개 항목을 매분기별 1회씩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내의 전지역에 대하여 음용수로서의 적부판정이 가능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려면 이에 필요한 장비와 검사약품, 전문인력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태임.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관내 지역을 취약지역을 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마실 수 있는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경로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도에 건의한 바가 있고 또 각종 세미나, 회의 등을 통해서도 수차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를 시승격때까지 논산군 계룡출장소로 충청남도와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또한 주민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 이전에 협약한 행정의 파기를 요구했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p>	<p>되지 않고 있으나, 제도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p> <p>○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를 시승격 때까지 논산군 계룡출장소로 전치시켜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보령댐 관리사무와 같은 도사업소로 하여 도시개발업무만 전담토록 별도로 둘 경우에 일반행정을 위한 시급규모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및 일반행정의 이원화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조기달성해 나가는 데에는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로 생각되며, 또한 논산군수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간 행정협약은 계룡대를 중심으로 한 가장 쾌적하고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건설하고자 막대한 국·도비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바 논산군수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함.</p>

질문일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p>○ 두마면 향한리 대전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지 또한 두마면 주민의 자동차번호판 부착에 따른 민원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업무를 계통출장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p> <p>○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과 홍보대책, 그리고 농조구역이 아닌 비몽리구역에 대한 지원계획 내지는 사업계획을 건의하거나 군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p>	<p>○ 본건은 1991년 3월 12일 향한리 주민의 진정으로 발생하게 된 광역행정 현안문제로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요로에 탄원 및 진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미해결된 상태로 진행중에 있으며, 두마면의 자동차 민원은 민원이 적은 데다가 전산시설 인력등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단계에서는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도 관련부서의 답변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군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p> <p>○ 전통예학을 바탕으로 한 선비정신과 양반정신을 군민의 가슴속으로부터 일깨워냄은 물론 범군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통한 전통윤리를 회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비몽리 구역에 투자된 금년도 사업비는 총 11개 사업에 약 4억원인데 농조의 몽리구역과 비몽리구역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비교 평가하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비몽리 구역에 대한 수리시설 사업 등 지원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음.</p>

논산군의회 현판식



○ 91. 4. 15 논산군의회 임성규 의장 등 17명의 의원과 김제태 국회의원, 정운영 논산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논산군의회 현판식을 가졌다.

의장 · 부의장 선거



○ 논산군의회를 대표하는 논산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하는 모습

의 원 선 서



- 논산군의회 의원은 논산군민의 대표자이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과 검소한 생활정신으로 주민의 바램을 신속히 파악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장면

본 회 의



- 군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군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의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 활동

운영위원회 회의장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면

총무위원회 회의장면



○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의안을 심의하는 모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선서하는 모습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구추가지정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지역에서 논산이 제외되어 이에 따른 추가지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숙의하는 모습

논산군의회의원구성

□ 개원식

-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17만 군민의 축복을 받으며 91년 4월 15일 정운영 군수와 군단위 기관장 및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 전반기

○ 의장단 선거

91년 4월 1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대 군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어 의장에 임성규(논산) 의원, 부의장에 강중선(강경) 의원이 각각 당선되어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 상임위원회 구성

92년 3월 11일 오후 2시 제9회 임시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논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를 개정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3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운(부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강대혁(연산)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서평석(연무) 의원이 각각 당선되어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 후반기

○ 의장단 선거

93년 4월 14일 제20회 임시회의시 본회의장에서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었는데 의장에 임성규(논산) 의원, 부의장에 서평석(연무) 의원이 각각 당선되어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 상임위원회 구성

94년 3월 9일 오후 2시 제29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송상현(논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윤종근(광석)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강두식(양촌) 의원이 각각 당선되었다.

우 수 사 례

바람직한 사례

○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

-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고, 청렴결백한 의원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으로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음.

○ 의원들이 매주 정기모임을 갖고 군정 논의 및 연구

- 1주일 동안 청취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보고 느낀 지역현안사항을 매주 화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토론하므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당면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서도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대처해 나가는 바람직한 관행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한 공무원(2명)에게 정기회 폐회시 공로패를 수여 사기진작 고취

○ 의정보고회 개최

-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역구별, 의원별로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에 알려주면서 민의를 파악 수렴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음.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 무리한 자료요구

- 아직도 일시에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개괄적이며 작성하기 곤란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산발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으로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음.

○ 과다질문 및 중복질문

- 일시에 많은 건수의 질문이나 사전에 질문요지서의 통보없는 질문, 또는 인기성 질문과 답변이 곤란하거나,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질문을 하는 사례.

반성과 교훈

- 의회의 의정활동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참봉사 실현의 표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의 회 용 어 해 설

1. 의회진행 관련사항

1. 의 사

의사란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의사정족수, 의사일정,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회기 · 집회 · 폐회

가. 회기

회기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회의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중은 물론 본회의의 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폐회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나. 집회

「집회」란 회의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

다. 폐회

「폐회」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 선포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개회 · 개의 · 산회

가. 개 회

「개회」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제○○회 ○○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의와 개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개 의

「개의」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으로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차 본회의 (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개의」나 「개회」 선포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의가 아니라 사담에 불과하다.

다. 산 회

「산회」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한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4. 정회와 속개

가. 정 회

「정회」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 사항으로는 「의회 진행중 의사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속 개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5. 휴회와 재개 · 유회와 공전

가. 휴회와 재개

1) 휴회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의회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결의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2) 재개

「재개」는 본의회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나. 유회와 공전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 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2) 공전

「유회」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공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6. 1일 1차 회의

회의는 1일에 1회밖에 열 수 없다는 의미로서 회의관례로 형성되어 온 용어이다. 즉 당일 의 의사가 모두 끝나서 산회를 선포하였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열지 못한다. 비록 회의중이더라도 24:00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고 산회를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산회가 된다.

왜냐하면 만일 산회(유회) 선포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되면 1차 회의를 다음날 까지 계속할 수 있다면 차수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된다.

24:00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정(24:00) 1~5분 전에 당일 회의를 산회하고 24:00 넘어 다음날 00:01 이후에 다음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회의차수변경」이라고 한다.

7.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 전체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 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의회차수의 (개회) 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 정족수

가. 의사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9. 부의와 상징

가. 부 의

「부의」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나. 상 정

「상정」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면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개 안건이 몇번 상정되게 된다.

10. 과 반 수

과반수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 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또는 3분의 2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11. 의결과 결의, 부대결의

가. 의결과 결의

「의결」과 「결의」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의결」은 각각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 부대결의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 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대결의」 또는 「부대조건」이라 한다.

부대결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 등에 희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회의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

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12. 가결과 부결, 미결

가. 가결과 부결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는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진행상에는 「부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미 결

「미결」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2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13. 질의와 질문, 서면질문

가. 질 의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나. 질 문

「질문」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 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또는 「내무행정에 관한 질문」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 질의와 질문 비교

「질문」과 「질의」를 구분하여 ①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처리상황이나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는 행위이나,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을 묻는 행위이며, ② 「질문」은 독립된 의사로서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상정을 하게 되나 「질의」는 안건의 심의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

라. 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14. 심의와 심사

「심의」와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논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15. 재적의원수와 재석의원수

「재적의원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재석의원수」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꺾어진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16. 호 선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하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등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회의체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선거권자인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고 특별한 요식행위 없이 선거하는 방법을 「호선」이라 한다.

II. 의안 관련 사항

1. 의안·안건·의제

가.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은 ①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②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③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④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① ~ ④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 및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 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나. 안건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을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다.

다. 의제

「의제」라 함은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의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중일 때에는 의제라 지칭한다.

그리고 이 의제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규칙에 「동의를 찬성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2. 발의와 제출, 제안과 제의

가. 발의와 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제출」이라 한다.

나. 제안과 제의

1) 제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2) 제 의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3. 수정안과 대안

가. 수정안

「수정안」은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 안

「대안」도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대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4. 제안설명(취지설명)

「제안설명」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설명이라고도 한다.

5. 의사봉 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선포시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외국 의회 민주주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 선포시, 표결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 
- 발행 : 논산군의회
 - 편집 : 논산군의회 사무과
 - 디자인·인쇄 : 금재인쇄사
- 

漢郡山瀋

植(陽) 斗姜

이태시
가야부연
자해
英
高

강대혁
은산
송상현
는산
徐平
錫
鍊
武
邑

金中直通

甲
鍾
根

김
광성
(두마)
우면
증
(마)

會第一代議真筆啣

林(四) 禹五重(隸武邑)金

尹	林	嚴	金	張	永
錫	聲	景	鍾	化	運
胄	奎	潤	日	洙	(夫赤面)
(魯城)	山	(城東面)	(茂谷面)	(彩雲面)	